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3480-01

# 기능성 표시식품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농림축산식품부

#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식품의 기능성 신고·표시제 도입·운영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05월

연구기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원 : 정세원 ((주)바이오푸드 CRO)

김주희 ((주)바이오푸드 CRO)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은주 ((사)한국국제생명과학회)

고명규 (전북대학교)

연구보조원 : 김윤영 ((사)한국국제생명과학회)

이하림 ((사)한국국제생명과학회)

김민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요 약 문

<p>연구의 목적 및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의 유용성 표시에 대한 정책 환경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소비자의 알 권리에 대하여 정부 제도가 도입됨</li> </ul> </li> <li>□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에 대한 근거 규정 도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표시가 허용되었으나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 부재한 상황임</li> </ul> </li> </ul>		
<p>연구개발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한 표시 및 광고행위에 대해 명시하였음</li> <li>✓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표시 및 광고 사례에 대해 기술하였음</li> </ul> </li> <li>□ 기존 유용성 표시식품에 대한 항목별로 기능성 표시방법을 기술하였음</li> <li>□ 정성적 문헌고찰(SR)을 통한 기능성 입증 방법을 서술하였음</li> <li>□ 개별인정원료 등록 업체의 일반식품 원료 등록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플로차트를 작성하였음</li> <li>✓ 섭취량평가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음</li> <li>✓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유관기관을 조사하였음</li> </ul> </li> <li>□ 해외 유사 사례 조사 등을 통한 식품 유형별 제품 개발 가이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을 위시한 해외국의 기능성원료 활용 제품에 대하여 조사하였음</li> </ul> </li> </ul>		
<p>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성표시식품 제도의 조기 정착을 통한 기능성 식품 산업 활성화</li> <li>□ 식품 기업이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li> </ul>		
<p>국문핵심어</p>	기능성표시	운영방안	해외 조사
<p>영문핵심어</p>	Functional claim	Operation plan	Overseas research

# 목 차

1. 제품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 방법 .....	1
2. 기존 유용성 표시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 방법 .....	21
3. 정성적 문헌고찰(SR)을 통한 기능성 입증 방법 .....	25
4. 개별인정원료 등록 업체의 일반식품 원료 등록 절차 .....	28
5. 해외 유사 사례 조사 등을 통한 식품 유형별 제품 개발 가이드 제시 ...	43
[붙임] 참고문헌 .....	57

[별첨]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해설서

## 1. 제품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 방법

###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에 한하여 표시·광고 하여야 함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현행 특수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만 자율심의를 미리 받아야 함. 기능성을 표시하는 일반식품도 기능성원료에 대한 표시·광고이므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및 광고 심의 내용에 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20)

✓ 기능성원료의 기능성에 국한한 표시 및 광고

- 배합된 원재료를 나열할 경우, 기능성원료와 기타 다른 원재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광고할 것
- 기능성원료의 인정된 기능성 내용이 아닌 다른 원재료의 기능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표현은 광고 표현할 수 없음

✓ 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에 적합한 용어 사용

건강보조식품(X)/건강기능식품(O)

임상시험(X)/인체적용시험(O)

약용식물, 약용작물(X)/전통식물(O)

복용(X)/섭취(O)

처방(X)/배합(O)

✓ 특허명칭 및 내용은 인정된 기능성 범위 내에서 광고할 것

- 기능성원료, 최종제품에 대한 특허명칭의 표현은 인정된 기능성 내용일 경우에만 광고 표현할 수 있음
- 인정된 기능성 이외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 표현할 수 없음
- 제품의 제법 관련 특허 내용은 광고 표현할 수 있음
- 기능성 원료를 제외한 다른 원재료의 특허 명칭 및 내용은 광고 표현할 수 없음
- 특허출원명칭 및 내용은 광고 표현할 수 없음

✓ 학술문헌의 연구 내용은 과학적 근거자료에 의한 사실 그대로를 인용하여 광고할 것

- 연구자료(그래프, 도표)를 광고에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 원문에 사용된 그래프 등을 그대로 인용하여야 하며, 출처, 시험조건, 시험 대상자 수 등을 명시하고, “인체적용시험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함께 광고할 것, “시험관(동물)시험 결과는 인체에서는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함께 광고할 것
- 연구자료는 원문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만 표현하여야 하며, 편집(수정, 삭제, 보완 등) 하거나 일부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 인용할 수 없음
- 영문의 시험결과(도표, 그래프) 내용은 한글로 번역한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 기능성 원료의 시험관/동물시험/인체적용시험 확인내용이 제품의 기능성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광고할 것
- ✓ 원료의 기능성 범위를 벗어나 질병, 증상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광고할 것
- ✓ 주표시면에 기능성원료 이외의 다른 원재료의 기능성을 표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광고할 것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7조(광고의 기준) 규정에 따라 식품 등을 광고할 때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시켜 광고하여야 함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광고 심의 가이드라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20)
  - ✓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인정된 기능성 내용을 표시 광고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의 세부 심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동 고시된 기능성 원료의 표시 및 광고 사례]

## EPA 및 DHA 함유 유지

다 같은 알티지 오메가?  
NO! 함량을 체크하세요!

**Point 1**

전연령대에서부터인, 총상 다름  
가량 많이 섭취한다는 경향에  
**오메가 3**  
(200 권장기능성분 시험방법 및 소비자 실태조사, 현재건강기능식품협회)

기억력 개선을 위해서 하루 900mg 이상 섭취 필수  
혈액순환과 눈건강을 위해 드시는 오메가3의  
기억력 개선 효과도 보시고 싶으시다면 꼭 900mg를 지켜주세요!

▶ 혈액 개선    ▶ 눈건강    ▶ 기억력 개선

프리미엄 EPA 및 DHA함유유지

이로아 rTG 오메가 3로  
도시생활을 건강하게!

URBAN LIFE + TGO OMEGA 3



이로아 알티지 오메가3는 자연형태와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가진  
프리미엄 오메가 3로 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알티지 오메가3++**

비타민	알티지 오메가3++	비타민D3	100%
비타민E	100%	비타민B12	100%
비타민K	100%	비타민B6	100%
비타민C	100%	비타민B2	100%
비타민A	100%	비타민B1	100%
비타민H	100%	비타민B5	100%
비타민P	100%	비타민B3	100%
비타민M	100%	비타민B4	100%
비타민Q	100%	비타민B7	100%
비타민R	100%	비타민B8	100%
비타민S	100%	비타민B9	100%
비타민T	100%	비타민B10	100%
비타민U	100%	비타민B11	100%
비타민V	100%	비타민B12	100%
비타민W	100%	비타민B13	100%
비타민X	100%	비타민B14	100%
비타민Y	100%	비타민B15	100%
비타민Z	100%	비타민B16	100%
비타민AA	100%	비타민B17	100%
비타민AB	100%	비타민B18	100%
비타민AC	100%	비타민B19	100%
비타민AD	100%	비타민B20	100%
비타민AE	100%	비타민B21	100%
비타민AF	100%	비타민B22	100%
비타민AG	100%	비타민B23	100%
비타민AH	100%	비타민B24	100%
비타민AI	100%	비타민B25	100%
비타민AJ	100%	비타민B26	100%
비타민AK	100%	비타민B27	100%
비타민AL	100%	비타민B28	100%
비타민AM	100%	비타민B29	100%
비타민AN	100%	비타민B30	100%
비타민AO	100%	비타민B31	100%
비타민AP	100%	비타민B32	100%
비타민AQ	100%	비타민B33	100%
비타민AR	100%	비타민B34	100%
비타민AS	100%	비타민B35	100%
비타민AT	100%	비타민B36	100%
비타민AU	100%	비타민B37	100%
비타민AV	100%	비타민B38	100%
비타민AW	100%	비타민B39	100%
비타민AX	100%	비타민B40	100%
비타민AY	100%	비타민B41	100%
비타민AZ	100%	비타민B42	100%
비타민BA	100%	비타민B43	100%
비타민BB	100%	비타민B44	100%
비타민BC	100%	비타민B45	100%
비타민BD	100%	비타민B46	100%
비타민BE	100%	비타민B47	100%
비타민BF	100%	비타민B48	100%
비타민BG	100%	비타민B49	100%
비타민BH	100%	비타민B50	100%
비타민BI	100%	비타민B51	100%
비타민BJ	100%	비타민B52	100%
비타민BK	100%	비타민B53	100%
비타민BL	100%	비타민B54	100%
비타민BM	100%	비타민B55	100%
비타민BN	100%	비타민B56	100%
비타민BO	100%	비타민B57	100%
비타민BP	100%	비타민B58	100%
비타민BQ	100%	비타민B59	100%
비타민BR	100%	비타민B60	100%
비타민BS	100%	비타민B61	100%
비타민BT	100%	비타민B62	100%
비타민BU	100%	비타민B63	100%
비타민BV	100%	비타민B64	100%
비타민BW	100%	비타민B65	100%
비타민BX	100%	비타민B66	100%
비타민BY	100%	비타민B67	100%
비타민BZ	100%	비타민B68	100%
비타민CA	100%	비타민B69	100%
비타민CB	100%	비타민B70	100%
비타민CC	100%	비타민B71	100%
비타민CD	100%	비타민B72	100%
비타민CE	100%	비타민B73	100%
비타민CF	100%	비타민B74	100%
비타민CG	100%	비타민B75	100%
비타민CH	100%	비타민B76	100%
비타민CI	100%	비타민B77	100%
비타민CJ	100%	비타민B78	100%
비타민CK	100%	비타민B79	100%
비타민CL	100%	비타민B80	100%
비타민CM	100%	비타민B81	100%
비타민CN	100%	비타민B82	100%
비타민CO	100%	비타민B83	100%
비타민CP	100%	비타민B84	100%
비타민CQ	100%	비타민B85	100%
비타민CR	100%	비타민B86	100%
비타민CS	100%	비타민B87	100%
비타민CT	100%	비타민B88	100%
비타민CU	100%	비타민B89	100%
비타민CV	100%	비타민B90	100%
비타민CW	100%	비타민B91	100%
비타민CX	100%	비타민B92	100%
비타민CY	100%	비타민B93	100%
비타민CZ	100%	비타민B94	100%
비타민CA	100%	비타민B95	100%
비타민CB	100%	비타민B96	100%
비타민CC	100%	비타민B97	100%
비타민CD	100%	비타민B98	100%
비타민CE	100%	비타민B99	100%
비타민CF	100%	비타민B100	100%

■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과 눈 건강 효과에 대한 기능성을 광고하고 있음.

## NAG (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유히 Tri-Join Star  
**트리조인스타**  
뼈와 관절을 위한 3가지 맞춤성분

Calcium · Vit.D3 · N-아세틸글루코사민

관절 · 연골 · 뼈에 영양 공급이 필요한 분 :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  
관절염 환자 : 관절염 증상 완화 및 통증 완화에 도움  
연골 재생 촉진 : 연골 재생을 촉진하여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  
뼈 건강 강화 : 뼈 건강을 강화하여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줄여줌

유히양행 800mg x 120정(96g) 건강기능식품

**성분**  
1정 800mg 중

N-아세틸글루코사민 분말(계), N-아세틸글루코사민 함량 95% 이상) 락토분말(칼슘 32%), 비타민D3, 글루콘산칼슘, 하이드록시프로필베타-글루코오스, 녹색잎총분말, 상어연골분말, 피쉬콜라겐펩타이드, 스테아린산디글리세르, Opti-MSM, 포스폴리아추콜콜분말, 비타민C, 이산화티타늄(광안정착색소), 자당지방산에스테르, 푸마르산제일알, 산화아연, 지자그린색소, 혼합제제지차콜전연분말, 황산알간

**효능 및 효과**  
-N-아세틸글루코사민 :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칼슘 :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혈액응고에 필요,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  
-비타민D :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  
-비타민C :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

**용법 용량**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십시오.

**포장단위**  
800mg x 120T (60일분) 10구 PTP 포장

■ 관절, 연골, 뼈에 영양 공급을 하며 골다공증 발생 위험감소에 대한 기능성을 광고하고 있음.



구아검,  
구아검가수분해물



**섭취량 및 섭취방법**  
1일 3회, 1회 4장씩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내포장재질**  
용기: 폴리에틸렌(PE)  
뚜껑: 폴리프로필렌(PP)  
안충비닐: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직사광선 및 고온다습한 곳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제품 개봉 후에는 흡습되지 않게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원**  
(주)에스엘에스 경기도 평택시 평성읍 추팔산단 2길 23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원**  
광동제약(주)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5  
\* 기타표시사항은 개별 케이스 내부의 제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정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식후 혈당상승 억제·장내 유익균 증식·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섭취 시 주의사항**

- ① 특정한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 ② 어린이가 섭취할 때는 보호자의 관리 감독하에 주의하여 섭취시켜 주십시오.
- ③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 ④ 질병치료 중인 분은 섭취 전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십시오.
- ⑤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⑥ 용기 안의 발습제는 드리지 마십시오.

\*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국번없이 1577-2488  
\* 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해 제품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식후 혈당상승 억제, 장내 유익균 증식, 배변활동 원활에 대한 기능성을 광고하고 있음.

구아바잎추출물



**제품의 유형**: 건강기능식품(구아바잎추출물 등 복합물, 아연, 비타민D)  
**원료명 및 함량**: 구아바잎추출물 등 복합물 (BENDU-381제2009-16호) 구아바잎추출물 (인도산), 녹차추출물 (중국산), 경미꽃잎추출물 (모로코산), 신화아연, 비타민D3혼합제 (중쇄중성지방, 비타민D3, d-α-토코페롤), 보라지유(감마리놀렌산 20%, 네덜란드산), 포도씨유(스페인산), 경채염류, 대두 레시틴, 말남(황남), 비타민C, 스피루리나, 코엔자임Q10 [캡슐기제] 젤라틴, 폴리 글리시릴시럽, 글리세린, 천연색소(심황색소, 치자형색소), 에틸바닐린 (대두(대두레시틴), 쇠고기(젤라틴) 함유)

**섭취량 및 섭취방법**  
1일 2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특이체질이거나 민감하신 분,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 입산부는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캡슐이 목에 걸릴 수 있으니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 과민반응에 의한 코 상태 (코 가려움, 재채기, 콧물)개선에 도움에 대한 기능성을 광고하고 있음.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 제품명 : 가쁜한 나
- 제품유형 : 건강기능식품
- 내용량 : 210g(1포 당 15g x 14포)
- 건강기능식품특허번호 : 농근장건강허 / 총남 당인시 송익을 복은1길 30
- 건강기능식품제조제조원 : (주)세우필에프앤피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송대길 39
- 원료명 및 함량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옥수수 ; 외국산(러시아, 헝가리, 세르비아 등)), 정제수, 프락토올리고당, 열대과일혼합농축액 (오렌지농축액, 망고농축액, 패션후르츠농축액, 구아바농축액, 바나나푸레(열대과일혼합농축액 : 이스라엘산), 선인장열매 농축분말(프랑스산), 락툴로즈, 차커리부리추출물분말, 열대 과일혼합제제(프랑탈렌글리콜, 트리아세틴, 발효주정, 합성 향료(열대과일향), 천연향료(오렌지오일)), 에리스리톨, 옥수수수염추출물분말, 호박농축분말, 식물성프로테아제 (브로멜라인), 식물성프로테아제(피피인), 물엿(맥아당), 식물혼합추출물분말(복합허브추출물), 염화칼륨 [우유함유]
- 섭취방법 : 1일 1회, 1회 1포(15g)를 공복에 그대로 섭취하십시오.

### 영양 · 기능정보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 배변활동 원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일 섭취량 : 1포(15g)

1일 섭취량 당	함량	% 영양성분 기준치
열량	25 kcal	
탄수화물	7 g	2 %
단백질	1 g 미만	1 %
지방	0 g	0 %
나트륨	0 mg	0 %
식이섬유	4,000 mg	

※ %영양성분기준치 :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

■ 배변 활동 원화에 도움에 대한 기능성을 광고하고 있음.



제품명	쾌변 화이바 젤리 [건강기능식품]
내용량	200g (20g x 10포)
섭취량 및 섭취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원료명 및 함량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외국산(러시아, 헝가리, 세르비아 등)), 정제수, 결정과당, 청포도농축액(칠레산), 프락토올리고당, 아가베시럽, 캄베시스, 혼합제분말(로커스트콩겉, 잔탄검, 한천, 타마린드겉), 차커리부리추출물분말(네덜란드산), 구연산, 청포도향(합성향료), 구연산삼나트륨, 사과농축액(국산), 수크랄로스(감미료), 당근농축액분말, 토마토추출물분말, 생선콜라겐, 차지그린엑스(차지방엑스, 차지장엑스), 황금혼합추출물, 녹차추출물분말, 히알루론산혼합제제(덱스트린, 히알루론산) <b>토마토 함유</b>
유통기한	2019. 09. 21
제조원 / 판매원	글리비엔에이치(주)무디팜사업부 / 한화제약(주)

■ 원활한 배변활동 도움에 대한 기능성을 광고하고 있음.

# 대두단백



**하루 단백질, 잘 챙기고 계신가요?**

#하루단백질 #한끼식사 #튼튼한몸

단백질 권장섭취량 1kg 당 약 1g  
단백질, 20대부터 충분한 보충이 필요

## 영양정보

제품명 밀라이트 단백질니 식품유형 곡류가공품 내용량 50g(168 kcal)

**원재료 및 함량** 분리대두단백(중국산, 대두 100%) 30.2%, 볶음귀리분말(캐나다산, 귀리 100%), 에리스리톨, NT19곡혼합분말(귀리(캐나다산), 수수(중국산), 현미보리(국내산), 흰강낭콩(캐나다산), 볶은렌즈콩(미국산), 볶은이집트콩(캐나다산)), SM쿠키앤크림파우더, 벌꿀분말, 열풍으로구워낸고소한현미, 열풍잡쌀, 열풍으로구워낸고소한올무, 마늘나이스볼, 렌틸크런치, 압착탈지대두, 프로틴볼

■ 간편한 단백질 보충에 대해 광고하고 있음.



**간편하게 씹어먹는 단백질 보충제품**

**단백질(Protein) 기능 정보**

- 1 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
- 2 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필요
- 3 체내 필수 영양성분이나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
- 4 체액, 산-염기의 균형 유지에 필요
- 5 에너지 토달, 지질의 합성에 필요

※6세 이하 어린이에게 용해 용이성 증가 시 섭취 금지  
※경미한 알레르기 반응에서 용해 용이성 증가 시 섭취 금지  
※어린이에게 적합 (연령 11세 이상)

◆제품명 : 프로틴 츠어블  
◆내용량 : 2,000mg X 140정 X 2병 (560g)  
◆식품유형 : 기타가공품

◆원재료명 및 함량 : 분리대두단백분말(싱가폴), 가수분해유정단백 (MPH, 미국), 포도당, 코코아분말, 건조맥주효모, 유청칼슘, 사카리 추출분말, 초콜렛향분말, 산화마그네슘, 밀크향분말, 우유분말, 비타민믹스(비타민A, B1, B2, B6, B12, 니코틴산아미드, 엽산, 비타민C, 비타민D3, 비타민E), 유산균혼합분말, 수크랄로스(합성감미료) [우유, 대두 함유]

\* 이 제품은 우유, 대두, 난류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  
1일 2회, 1회 5정씩 씹어서 섭취 하십시오.

운동전    운동중    운동후    취침전    취침

**섭취요령**

- ◇운동 전 : 30분 전    ◇운동 중 : 물 대신    ◇운동 후 : 30분 이내
- ◇취침 전 : 30분~1시간 전 (정량의 반응량 섭취)

■ 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 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필요, 체내 필수 영양성분이나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 등 단백질의 기능성에 대해 광고하고 있음.

# 대두식이점유



정제수, 말토덱스트린, 카제인나트륨, 채증유(카놀라유/외국산), 대두화이버 1.65%(미국산), MCT오일(인도네시아산), 혼합제제(영양강화제, 말토덱스트린, 염화칼륨), 분리대두단백, 화이버겔, 혼합제제(영양강화제, 타우린, 말토덱스트린, 혼합제제( $\alpha$ -D-토코페릴이세데이트, 변성전분, 말토덱스트린, 이산화규소), 혼합제제(비타민A에스테르, 영양강화제, 말토덱스트린, 아라비아검, 옥수수전분), 혼합제제(비타민B12, 산도조절제, 말토덱스트린), 혼합제제(비타민D3, 영양강화제, MCT오일, 아라비아검, 자당, 옥수수전분), 혼합제제(비타민K1, 자당, 아라비아검), 혼합제제(혼합제제(말토덱스트린, 영양강화제), 혼합제제(말토덱스트린, 영양강화제, 산도조절제, 말토덱스트린, 영양강화제, 영양강화제, 산도조절제, 염화칼륨, 유화제

■ 국내 환자용 균형영양식으로 식품의 기능성에 대해 광고하고 있음.

# 라피노스



■ 원활한 배변활동, 장내 유익균의 증식과 유해균의 억제에 대한 기능성에 대해 광고하고 있음.

## 마늘

### 365일 일하는 당신을 위해 메디칸플러스로 간편하게!



- 01 밀크씨슬**  
저치고 피로한 현대인의 간 건강을 위한 밀크씨슬  
밀크씨슬의 실리마린 성분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02 마늘** (경상남도 남해산 마늘 사용)  
마늘 속 알리인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03 활력비타민, 비타민 B 5종**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나이아신, 판토텐산  
1일 영양성분기준치 100% 충족
- 04 아연과 셀렌, 미네랄 공급!**  
정상적인 면역기능과 세포분열에 필요한 아연과  
항산화영양소 셀렌 함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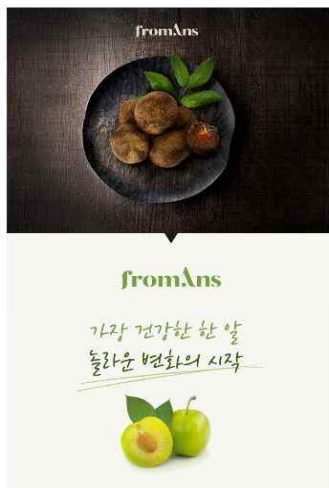
식품의 유형	■ 건강기능식품
제조국	■ 39g (650mg x 60정)
제조업소 (명칭, 주소, 대표인사, 연락처)	■ 뉴트리바이오텍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영로 663번길 127-16
유통기한	■ 유통기한 : 2021.01.27
내용량	■ 39g (650mg x 60정) / 1개월분
에너지	■ 1회 권장요마늘분말 (마늘 국내산), 밀크씨슬추출물 (미국산), 니코틴산아미드, 판토텐산칼슘, 산화아연, 아셀렌, 나트륨 (제인산칼슘, 아셀렌, 나트륨), 비타민B1(90%이상), 비타민B1(10%이상), 비타민B2, 칼슘, 셀레늄, 크롬, 산하드로스(프로필렌글리콜, 유당, 유당첨가물, 유당(미국산), 락트린), 카복시메틸셀룰로스(일본산), 아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트리아세틴,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유류첨가)
영양정보	■ 열량 0kcal, 탄수화물 1g (미안(0%), 단백질 0g(0%), 지방 0g(0%), 나트륨 0mg(0%), 실리마린 130mg, 밀리안 6mg, 비타민B1 1.2mg(100%), 비타민B2 1.4mg(100%), 비타민B6 1.5mg(100%), 나이아신 15mg(100%), 판토텐산 5mg(100%), 아연 4.25mg(50%), 셀렌 27.5µg(50%)
기능정보	■ 마늘 - 총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밀크씨슬추출물 -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이 용해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판토텐산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 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 필요 / 셀렌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섭취방법	■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목에 걸리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부용 및 임부용을 주의하십시오. 어린이, 청소년 또는 섭취 시 포괄적이며 심각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경 식품 성분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시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열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주의사항	■ 이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 마늘 속 알리인의 콜레스테롤 개선 기능성에 대해 광고하고 있음.

## 매실추출물



몸 속 노폐물 대청소를 시작해보세요!



fromAn's 플럼	
식품의 유형	과채 가공식품
제조국	대한
제조원	Gyeong-Yen Bio-Tech Co., Ltd(Made in Taiwan)
수입원	(주)바이오텍(이천)
판매처	fromAn's
내용량	부피: 300ml (신는 국산) 1,399
섭취량 및 섭취방법	360g(12g x 30봉) 총 1,050kcal 기간에 따라 1일 1봉~2봉을 식사 후 총 300cc(2잔정도)와 함께 섭취하세요.
원료명 및 함량	영양성분
플럼 85%	탄수화물 4g(1%)
플럼 분말 2.4%	지방산 0.1g(0%)
플럼 2.0%	단백질 0.1g(0%)
플럼 분말 1.5%	지방산 0.1g(0%)
플럼 0.2%	지방산 0.1g(0%)
플럼 분말 0.2%	지방산 0.1g(0%)

■ '몸 속 노폐물 대청소'로 원활한 배변활동에 대한 매실의 기능성에 대해 광고하고 있음.

## 목이버섯식이섬유



순수 자연원료 외엔 아무것도 담지 않았습니다.

## 숲에서 숙취해소환 드린퀸

제품명: 숲에서 드린퀸  
 식품의 유형: 기타기능품  
 원재료 및 함량: 노루궁뎅이버섯80%(국산)/헛개나무열매10%(국산)/목이버섯10%(국산)  
 제조원: 단비식품/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140  
 판매원: ㈜숲에서/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3 에이스트원타워2차 308호  
 밀함유 이제품은 난류, 메밀, 땅콩, 대두, 호두, 조개류(전복갑질)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시설에서 제조하였습니다.  
 유통기한: 축면표기일까지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고객센터번호: 070-7123-9898(수신자요금부담)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상 주의사항: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 하십시오.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품 및 교환장소: 구입처 및 판매원

■ 식이섬유소 함량과 비타민D의 함량이 높은 목이버섯이 함유된 여성을 위한 숙취해소제로 목이버섯의 기능성을 포함하여 광고하고 있음.

## 밀 식이섬유



### 상품정보 제공고시

· 식품의 유형	과 제 가공품
· 생산자	대일제약(주)
· 소재지	경기도 평택군 갈매면 남야리 346
· 제조연월일	2019. 10. 23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2021. 10. 23
·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50g
· 포장단위별 수량	1개
· 원재료명 및 함량	밀싹100%(국내산, 무농약)
· 영양성분	해당사항 없음
· 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해당사항 없음
· 영유아식 또는 저염조리식품 등에 해당 하는 경우 표시(영고사정산의질, 유무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해당사항없음
·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02-518-8879

■ 콜레스테롤 감소 도움, 혈당조절 도움, 풍부한 식물영양소, 높은 항산화효과, 면역력, 체중감소에 도움에 대한 어린 밀싹의 기능성에 대해 광고하고 있음.

# 바나바잎추출물

**Daily One**

현대인의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리얼 바나바 당케어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나바잎추출물(오로솔산) 포함 5종 복합기능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리얼 바나바 당케어**  
Real Banaba Blood Sugar Car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오로솔산 함유 바나바잎추출물 함유

건강기능식품 | 500mg x 60정(30g)  
바나바잎 추출물, 비타민B, 아연, 셀레늄, 크롬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주는 바나바잎 추출물의 기능성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음.

**[원료명 및 함량]** 바나바잎추출물(인도산), 건조효모, 식이아연, 아연헥사아세트산염, 아연피리피리나트, 제이(인산칼슘), 비타민B, 엽산, 칼슘셀룰로스, 폴리코사놀분말(유스타틴), 식염추출고형분(국산), 귀리식이섬유(독일산), 정제말토스, 차키리뿌리추출분말, 아산황구소,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나소화성말트덱스트린,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당귀추출분말, 비타민C

**[섭취법 및 섭취량]**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제제인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보관방법]** 고온다습한 곳이나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제조업체]** 플리피엔(주), 알뜰이앤지(주) \* 이 제품은 난류, 우유, 메밀, 콩, 대두, 밀, 고등어, 개,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가리비, 홍합)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부작용 중증사례 신고는 국번없이 1577-2488

**[영양기능성분]**

**[바나바잎추출물]**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B]**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아연]**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셀레늄]**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1일 섭취량 : 1정(600mg)

1일 섭취량 당 함량 : 열량 0kcal, 탄수화물 0.0g(0%), 단백질 0g(0%), 지방 0g(0%), 나트륨 0mg(0%), 비타민B: 1.2mg(100%), 아연 8.5mg(100%), 셀레늄 65µg(100%), 크롬 30µg(100%), 코로솔산 1.3mg(\*) (1인의 주체는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임)

**[제조원]** 플리피엔(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동일로 1985번길 44-20 **[유통전문판매원]** (주)네이처스라이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원대로 611, 4층 **[소비자상담실]** 02-470-1512 **반품 및 교환처** 구입처 또는 본 제품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해 교환 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 2020/4/2(일)까지 마다 삼이할 수 있음

**NUTRALIFE**

## 혈당조절 바나바잎 추출물

Control Banaba's leaves

바나바잎 추출물, 코엔자임Q10, 비타민, 미네랄 보충용 계통

**혈당조절 바나바잎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 1,400mg x 60정 (총 84g)  
제품 유형 | 건강기능식품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

■ 혈당조절에 도움을 주는 바나바잎 추출물의 기능성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음.

**제품정보**

<p><b>[원료명 및 함량]</b> 바나바잎추출물, 코엔자임 Q10, 비타민B, 아연헥사아세트산염, 아연피리피리나트, 제이(인산칼슘), 비타민B, 엽산, 칼슘셀룰로스, 탄산칼슘, 감자전분, 카복시메틸셀룰로스,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나소화성말트덱스트린,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당귀추출분말, 비타민C</p> <p><b>[섭취법 및 섭취량]</b>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b>[섭취 시 주의사항]</b> 알레르기 제제인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b>[보관방법]</b> 고온다습한 곳이나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b>[제조업체]</b> 플리피엔(주), 알뜰이앤지(주) * 이 제품은 난류, 우유, 메밀, 콩, 대두, 밀, 고등어, 개,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가리비, 홍합)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부작용 중증사례 신고는 국번없이 1577-2488</p>	<p><b>[포장재질]</b> 폴리카-유리, 투명-PP(폴리프로필렌) (유통기한) 용기(라벨)무색 하단 표시일까지 (년/월/일) <b>[반품 및 교환장소]</b> 판매원 및 구입처 <b>[수입원 및 소재지]</b> (주)네이카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1308호 (우동, 에이스하이테크21)</p> <p><b>[제조원]</b> Natural Life Nutrition Inc.</p>	<p><b>[영양기능성분]</b></p> <p><b>[바나바잎추출물]</b>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b>[코엔자임Q10]</b> 100mg, 비타민B: 1.2mg(100%), 아연 8.5mg(100%), 셀레늄 65µg(100%), 크롬 30µg(100%), 코로솔산 1.3mg(*) (1인의 주체는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임)</p> <p>* 본 제품은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 부작용 중증사례 신고는 국번없이 1577-2488 * 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해 교환 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p>
---	--	--

**상품정보고시**

<b>제품명</b>	혈당조절 바나바잎추출물
<b>제품의 유형</b>	건강기능식품
<b>내용량</b>	1,400mg x 60정(84g)
<b>원료명</b>	바나바잎추출물, 코엔자임 Q10, 비타민B, 아연헥사아세트산염, 아연피리피리나트, 제이(인산칼슘), 비타민B, 엽산, 칼슘셀룰로스, 탄산칼슘, 감자전분,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나소화성말트덱스트린,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당귀추출분말, 비타민C
<b>포장재질</b>	용기-유리, 투명-PP (폴리프로필렌)
<b>제조원</b>	Natural Life Nutrition Inc. / 캐나다
<b>판매원</b>	(주)네이카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1308호 (우동, 에이스하이테크21)
<b>고객상담실</b>	대표번호 1544-7410
<b>반품 및 교환처</b>	판매원 및 구입처

**보리식이섬유**



**BARLEY SPROUT PLUS**  
 새싹보리 플러스 4gx15포 (60g)  
 새싹보리(국내산) 100%



제품명: 올웨이즈 새싹보리 플러스, 식품유형: 기타기능성, 내용량: 4g x 15포 (60g), 품목제조번호: 2023030044561  
 원재료명 및 함량: 새싹보리(국내산) 100%, 원료공급처: 농업회사법인 (주)유성영)도 인성시 생육국 산촌 진흥사업 12  
 제조원 (주)유성영 (주소:충청남도 연기시 영동면 국동길 73-27, 전화: (주)유성영)도 인성시 생육국 산촌 진흥사업 12 제정할 70  
 소비자상담실: 02-990-8181, 판매처: 고영식품 (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1114호) (문의: 02-990-8181)  
 판매처: 고영식품 (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1114호) (문의: 02-990-8181)  
 제조사: 유성영 (주) (소재지: 충청남도 연기시 영동면 국동길 73-27, 전화: (주)유성영)도 인성시 생육국 산촌 진흥사업 12  
 제조사: 유성영 (주) (소재지: 충청남도 연기시 영동면 국동길 73-27, 전화: (주)유성영)도 인성시 생육국 산촌 진흥사업 12  
 제조사: 유성영 (주) (소재지: 충청남도 연기시 영동면 국동길 73-27, 전화: (주)유성영)도 인성시 생육국 산촌 진흥사업 12



■ 현대인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식이섬유와 미량영양소를 풍부하게 보충해주는 새싹보리의 기능성에 대해 광고하고 있음.

**분말한천**



제품명	키케몽 비타젤리 홍삼맛	식품유형	캔디류
내용량	60g(191kcal), 흑마늘추출액(국내산)1%, 홍삼농축액(국내산)0.2%, 비타젤리(영국산)0.15%		
원재료명 및 함량	물엿, 설탕, D-소르비톨(습윤제), 젤라틴(유착제, 스펀지질), 흑마늘추출액(국내산1%), 홍삼농축액(고형분 60% 이상, 국내산) 0.2%, (천연색소)Rb1, Rb1 및 Rp3(각각 7mg/g 이상, 65Brix 이상), 고구마전분(국내산), 황당(홍삼향), 한천(분말한천, 고사카기-인도네시아산), 비타젤리(영국산)0.15%, 글리세린(자연산에스테르(유착제), 구연산(산도조절제), 구연산나트륨(산도조절제), 식용유(기능성첨가제)		
유통전문판매원	데이웰즈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10길 39	www.daywellz.com	
제조원	달곰씨앤에프	품목보고번호	20140356241164
유통기한	별도표시일까지	포장재질	폴리프로필렌
(주의사항) · 적당량을 피하고 2~3년간 장소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 부정, 불량식품신고: 국번없이 1399 · 본 제품은 광물(대우, 우유, 폐수)나 소금 등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사로부터 제조되고 있습니다. · 반올 및 교환정책: 본 회사 소비자 상담실 (1599-0962) 또는 구입처 · 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산과정상 잔류 농약이 나올 수도 있으나 컴퓨터로 검출하므로 중 중량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b>영양정보</b>		총 내용량 60g 191 Kcal	
나트륨 13mg	1%	탄수화물 44g	14%
당류 23g	23%	지방 0.2g	0%
트랜스지방 0g		포화지방 0.2g	2%
콜레스테롤 0mg	0%	단백질 3g	5%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천이 들어가 떡처럼 쫄득한 식감을 주는 한천의 기능성을 광고하고 있음.



스피루리나



[원재료명 및 함량] 하와이안 스피루리나 원안 100%  
 [수출국 및 제조사] 미국/US: International Corp.  
 [섭취량 및 섭취방법] 1일 1회, 1회 2정을 씹어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시 주의사항] 특정 원로성분에 민감하신 분들은 섭취에 주의하시고 장병치러니 약물투여를 하시는 분들은 섭취 전 의사 또는 약사의 상의하십시오.  
 [보관방법] 직사광선 및 고온다습한 장소를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유통기한] 측면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년/월/일 순)  
 [포장재질] 병-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뚜껑-폴리프로필렌(PP)  
 [수입업소명 및 소재지] (주)에스엘푸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남대로 63, 840호(잠원동, 크레신타워-1)  
 [반물 및 교환장소] 제품 구입처  
 \*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치료용이 아닙니다. \* 본 제품은 공공기관에서 소비와 분할에 관계없이 파기하여 교환 또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제품의 유통기한이 만료된 제품은 도저히 마십시오. \* 이상 시에 신고는 1577-3488

영양·기능정보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일 섭취량 :	2정(1,000mg)	
1일 섭취량 당	함량	%영양성분기준치
열량	0kcal	
탄수화물	0g	0%
단백질	0.5g	1%
지방	0g	0%
나트륨	10mg	1%
총 인공색소	15mg	

\* %영양성분기준치 :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

LOT : 유통기한  
 EXP : 최신입고상품발송

■ 항산화와 피부건강에 도움을 주는 스피루리나의 기능성을 광고하고 있음.

스피루리나



알로에 겔 피엑스

장 건강, 피부건강 및 면역기능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겔 함유 건강식품

위/장 건강을 도와주며 피부 건강 및 면역기능 강화에도 도움을 주는 고품질의 알로에 겔과 양배추 및 후추추출물이 위장장애 개선에 도움  
 자극적인 음식,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생활 등으로 약해진 장, 피부 건강, 면역 기능 강화

상품상세정보

제품명 : 알로에 겔 피엑스 / Aloe Gel PX  
 제품분류 : 건강기능식품 / 알로에 겔 함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및 소재지 : (주)노바렉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1길 94  
 기술제공 및 판매원 : 뉴스킨 코리아(주)  
 영양·기능정보  
 - 장 건강에 도움, 면역력 증진, 피부 건강에 도움

영양·기능 정보

1회 분량	3캡슐(1,500 mg)
1회 분량 당 함량	열량 10 kcal, 탄수화물 0 g(0%), 단백질 0 g(0%), 지방 1 g(2%), 나트륨 0 mg(0%), 총 다당체 50 mg(기타원료유래 다당체 11.355 mg) * ( )안의 수치는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임

알로에 겔·피부건강·장건강·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장 건강, 피부건강 및 면역기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알로에 겔의 기능성을 광고하고 있음.

## 유단백가수분해물



### 코티솔 플러스

코티솔의 분비조절에 관여하여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의 개선에 도움

스트레스, 긴장완화에 좋은 락티움과 켈달루프종의 멜론추출물, L-테아닌, 식물스테롤(베타시토스테롤) 등 함유.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와 관련된 건강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품명 : 코티솔 플러스 / Cortisol Plus

제품분류 : 건강기능식품 / 개별인증형 제품

제조업소 및 소재지 : (주)노바렉스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94

기술제공 및 판매원 : 뉴스킨 코리아(주)

영양기능정보

락티움: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영양·기능 정보

락티움: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영양성분 기준)

1회분량 1캡슐 (360 mg)		1회분량 총량 1캡슐(360mg)	
영양성분	량	기준	비율
열량	0 kcal	-	-
탄수화물	0 g	0%	0%
나트륨	5 mg	1%	0%
칼슘	100 mg	20%	50%

\*%영양소 기준치: 1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제품관련정보 : 코티솔 플러스는 다양한 스트레스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와 관련된 건강상태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분을 계공함으로써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인증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코티솔 플러스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락티움 이외에도 켈달루프 종의 멜론 추출물과 L-테아닌, 식물스테롤(베타시토스테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 스트레스, 긴장완화에 좋은 락티움의 기능성에 대해 광고하고 있음.

## 이놀린, 치커리 추출물



제품명	프리벤티 오가닉 100% 아가베 이놀린
내용량	3g × 40 스틱
식품유형	기타가공품
개발사	(주)하나마이 & IMAG organics
원재료	100% 블루 아가베 데킬라 베버
포장재질	PE, 종이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년 6개월 (18개월)

■ 유산균의 먹이로 원활한 배변활동을 돕는 이놀린의 기능성에 대해 광고하고 있음.

## 인삼



제품명	진생칸 인삼열매 농축액 질
품목보고번호	20100376046146
식품의 유형	기타가공품
제조원/판매원	㈜한국지내식품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내용량	12ml X 30포
내포장재질	폴리에틸렌 (PE)
교환 및 반품처	구입처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섭취량 및 섭취방법	1일 1-2회, 1회 1포, 직접음용 또는 물에 희석해서 음용
원재료	인삼열매농축액, 배농축액, 감초추출물, 알로에베라겔분말, 구연산 등
배송정보	<p>배송 업체 : CJ대한통운</p> <p>배송 비용 : 5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5만 원 미만 구매 시 2,500원 배송비 추가 (단, 교환 및 반품의 경우 배송비 고객부담)</p> <p>배송 기간 : 입금 확인일 기준 1일~5일 소요(주말, 공휴일 제외)</p> <p>배송 방법 : 주문서 및 입금 확인 후 제품 출고되며 출고 시 문자로 전송. 배송 추적 가능.</p> <p>배송기간은 제고의 유무, 배송지역의 특성에 따라 1-2일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재종일 경우 배송 일시지연에 남겨주세요.</p>

■ 항노화, 간기능 개선, 인지 및 기억력, 항암의 효과를 가진 인삼에 대한 기능성을 광고하고 있음.

## 차전자피식이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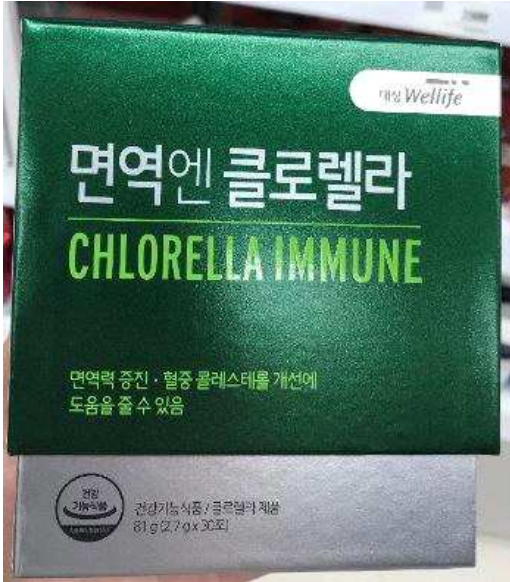


### 제품상세정보

제품명	캐변엔 차전자피
내용량	6,000 mg x 30포(180 g)
제품의 유형	건강기능식품(차전자피 식이섬유 제품)
원료명 및 함량	차전자피분말(인도산), 정제포도당, 결정셀룰로스, 포도맛분말(미국산), 포도향혼합제제, 푸룬과즙분말(미국산), 키도올리고당, 구연산, 곡류효소
섭취량 및 섭취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충분한 물로 내용물을 완전히 부풀린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섭취 후 이상 증상이 있을 시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의(의사)에게 상담하십시오. 임신, 수유부나 의약품용 섭취하시는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섭취하지 마십시오. 계 또는 세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관방법	반드시 직사광선과 습기를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소비자상담실	02 - 6964 - 7741
내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반품 및 교환처	구입처 또는 소비자상담실
건강기능식품제조원	(주)유니셀팜 /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메가홀리스3로 56
연구개발사	(주)비스테리올라이오 / 충청북도 충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411호 기업연구관1
유통전문판매원	플립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05, 2층 202호

■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주는 차전자피의 기능성에 대해 광고하고 있음.

## 클로렐라



■ 면역력 증진,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는 클로렐라의 기능성에 대해 광고하고 있음.

## 폴리감마글루탐산



**[제품명]** 어골칼슘 피지에이 플러스      **[내용량]** 800 mg x 60정(48 g)  
**[제품의 유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명 및 함량]**  
 어골칼슘, 폴리감마글루탐산, 비타민D3(비타민D3), 아라비노갈, 저당, 목수수전분, 가공유지, 이산화규소, dl-α-토코페롤, 황산망간, 비타민K(혼합체(비타민K1, 아라비노갈, 수크로오스), 목수수전분, 차가리추출분말, 미강추출분말, 산화마그네슘, 상아연골분말, 엠에스엠(MSM), N-아세틸글루코사민, 보스웰리아추출분말) **개입유**  
**[섭취량 및 섭취방법]**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시 주의사항]**  
 -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의 경우 섭취 시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하에 섭취하십시오.  
 - 용기 안의 살리카겔(방습제)은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보관방법]**  
 -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 및 유통하시고,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원]** (주)한국씨엔에스파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삼경로 16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원]** (주)웰스하우스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안로 79, 2층(정안동)  
**[소비자 상담실]** 02-2243-9909  
**[반품 및 교환처]** 구입처  
**[내포장재질]** 용기(PE), 뚜껑(PP)

**영양·기능정보**

**[폴리감마글루탐산]** 체내 칼슘흡수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칼슘]**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 줄 수 있음  
**[비타민D]** 칼슘과 연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 줄 수 있음  
**[비타민K]**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뼈의 구성에 필요  
**[망간]** 뼈 형성에 필요, 에너지 아플에 필요, 유래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튼튼한 골격과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폴리감마글루탐산의 기능성에 대해 광고하고 있음.



# 프로바이오틱스

**GC녹십자**  
GC녹십자 마이크로바이옴  
**포스트바이오틱스**  
장내 근분 환경부터 지켜주는!  
프로바이오틱스, 프락토올리고당,  
아연, 락토탄산

건강기능식품  
4g x 30포 (20g)

균형있는 장내 환경을 위해  
**엄선된 7가지 균주의 과학적 배합!**

- 장내 근분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바이오틱스
- 균형있는 장내 환경을 위해 엄선된 균주의 실현
-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스!

제품명: GC녹십자 마이크로바이옴 포스트바이오틱스  
제품의 유형: 건강기능식품 / 프로바이오틱스, 프락토올리고당, 아연, 락토탄산  
내용량: 4g X 30포 (120g)

원료명 및 함량(%)  
락토바실루스 플란티움(L. plantarum), 스트렙토코쿠스 세로피우스(S. thermophilus), 락토바실루스 캄페니시스(L. thermophilus),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둠(B. bifidum), 비피도박테리움 브레브(B. breve), 락토바실루스 아시도필루스(L. acidophilus), 비피도박테리움 아나피리스(B. animalis ssp. lactis), 프락토올리고당, 신바이옴, 락토탄산, 산물성코팅물질, 정제말랑, 카페인나트륨, 우장디백말랑, 제이인 산질, 대두레시틴, 아산화규소, 정제소금, 규이탄, 말차분유, 감람돌올리고당, 생선 골라겐, 일구르톡산화합제(엑스트라), 항산화제(비타민 E), 혼합저체형성황산, 프락토올리고당, 오구르톡산화합제(엑스트라), 혼합저체형성황산, 주정, 프락토올리고당, 아산화규소, 비타민D, 난황분말, 락토바실루스 아시도필루스 사균제출입분말, 대두 배양분말(유류가 포함), Osemo K20, 당류가공품(락토바실루스 투리디(알타리우산균) (P. yoochii), 비타민B12, 엽산, 우유, 대두 함유)

섭취 및 섭취방법: 1일 1회, 1회 1포씩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본 제품은 섭취자의 신체상태에 따라 반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질병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알레르기 제질 중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4. 섭취 시 가스창, 트림, 복통, 복부팽만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6. 이상사내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7. 알레르기 제질인 경우 섭취를 확인한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8.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관방법: 1. 직사광선을 피하여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2.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성에 대해 광고하고 있음.

# 프로폴리스 추출물

우리가족 정상적인 면역기능 & 항산화 비산!  
잡았다! 우리가족 건강을 지키는 꿀팁  
**그린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  
사포닌 함량  
100%

항산화 성분  
플라보노이드  
17mg

간호 요대 유래  
아연 함유

식물성 캡슐  
사용

제품 및 영양정보  
PRODUCT & NUTRITION INFORMATION

**GREEN PROPOLIS**  
IMMUNITY BOOSTER HEALTH & FUNCTIONAL FOOD.  
**그린 프로폴리스**

제품명: 그린 프로폴리스  
내용량: 500mg X 90캡슐(45g)  
제품의 유형: 건강기능식품(프로폴리스추출물,아연(저함))

원료명 및 함량  
프로폴리스추출물(폴리페놀류 8%이상, 호주산 42.5%, 건조효모(아연함유), 엑스토니아산, 히조분말(명국산), 경정제(일본산), 스테아르산(미국산), 감정제(일본산), 아세톤(일본산), 유류분말, 우유 함유)  
첨가제: 히드록시프로필베타글루코시드

섭취량 및 섭취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①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은 원료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②섭취 시 목에 걸리거나, 불편하실 수 있으므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③아기와의 접근면에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④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위하여,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⑤프로폴리스에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영양·기능 정보

[프로폴리스]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아연] 정상적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1일 섭취량(500mg) 당 함량	%영양성분기준치
열량	0 kcal
탄수화물	0 g 0%
단백질	0 g 0%
지방	0 g 0%
나트륨	0 mg 0%
아연	3.5 mg 41%
총플라보노이드	17.0 mg

※ %영양성분기준치 :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

8'809246'680999

면역기능, 항산화 효과를 가진 프로폴리스의 기능성에 대해 광고하고 있음.

## 호로파종자식이점유

남성의 자신감과  
활력증진을 한번에!

# 미스터리업



영양 · 기능정보	내용
1일 섭취량	2캡슐 (1,000mg)
1일 섭취량 영양성분 당 함량	영양성분 기준치 %
말당	5 kcal
탄수화물	1 g 미만 0%
단백질	0 g 0%
지방	0 g 0%
나트륨	0 mg 0%
4-Hydroxy-L-threonine	10.2 mg
D-pinitol	18.64 mg
%영양성분 기준치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제품명】** 미스터리업 **【내용량】** 500mg x 30캡슐 x 1EA(15g)  
**【판매처】** (주)에이치앤에스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아리로 730-15  
**【제조원】** (주)에이치앤에스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예곡길 61 (소박자상당빌) 1800-6490  
**【유효성분 및 함량】** 호로파종자 중 추출물(호로파비인(인도산), 비수리(국내산), 엘라딘아라본(베트남), 홍산농죽예본(국내산), 곽정살로로스, 인산칼슘, 건조요오드인 함유,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비타민비타민복합제(제이인산칼슘, 비타민C, 4-하이드록시티로신, 비타민D, 니코틴아미드, 신화아민, 비타민A, 비타민B-염산염, 비타민B-염산염, 비타민B, 엽산) (합술기제) 엘라딘, 장척수, 카라멜색소, 빙초산, 자당자방산에스테르 (식고기 함유) (내포장제일) 용기(에프.에프.티), 무정수화탄, 에프.에프.티, 질리카겔(PP), 완충아닐린)  
**【섭취법 및 섭취방법】** 1일 1회, 1회 2캡슐씩 물과 함께 섭취  
**【섭취시 주의사항】** - 과량 섭취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알레르기 체질 하거나, 특장질환이 있으신분은 상문확인 및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호로파종자 중 복합수출물) 병용 약제(특히 고령어, 계, 개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마늘, 양파,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등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사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 ※ 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이상 사례 신고는 국번없이 1577-2488
- ※ 본 제품에는 미스터리업(500mg x 30캡슐) 1EA가 들어있습니다.
- ※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 남성 갱년기 건강에 도움을 주는 호로파종자식이점유의 기능성에 대해 광고하고 있음.

## 홍국

**Dr. Elizabeth's**  
Monacolin K Solution

**콜레스테롤엔 모나콜린K 솔루션**

Dr. Elizabeth's Group Choice  
: Reduce Cholesterol - Derived from Red Yeast Rice

**콜레스테롤이 고민일때 '콜레스테롤엔 모나콜린K 솔루션'으로 해결하세요!**

답답한 혈관을 시원하게!  
콜레스테롤을 시원하게!

유형: 건강기능식품  
규격: 39g (650mg X 60캡)  
1일 섭취량: 1캡 (650mg) 총 60일 섭취량

Day 1 Water YES

**POINT 01.**  
세계인이 주목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홍국  
홍국은 일반 쌀을 쪄서 중국균을 접종한 후 발효시킨 것이다. 중국군인 Monas Ruber의 발효액에서 콜레스테롤 합성 억제 활성을 가진 가진 화합물을 분리하였으며, 이가 모나콜린K이다.

**상품일반정보**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원: (주)에이치앤에스(주)푸디(주)사원부원 /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룡산길 8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원: (주)드림리더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1, 문정현대저축은행빌딩 A동 1107, 1108호  
 고객센터: 080-347-0303

내포장재질: PVC(폴리염화비닐) / 알루미늄 호일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 1일 1회, 1회 1캡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원료명: 홍국분말(미국산), 모나콜린K, 곽정살로로스, 유당분해효소(우유, 미국산), 덱스트린, 해조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코엔자임Q10, 차가뭇뿌리추출물분말, 글리세린(정제), 인산칼슘, 유수함유

보관방법: 고온 다습한 곳과 직사광선을 피하여 습기가 적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영유아 및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주의사항: 특장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 임신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반복 및 교환안내: 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제조되었습니다. 만약 구입 시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구입처 또는 본사 소비자상담실에서 즉시 교환하여 드립니다.

\*부작용: 추경사상 신고는 국번없이 1577-2488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콜레스테롤에 효과가 있는 홍국의 기능성에 대해 광고하고 있음.

# 홍삼



### 홍삼의 5대 기능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 기억력 개선 향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면역력 증진
- 피로개선
- 혈액흐름
- 기억력 개선
- 향산화

#### 영양·기능 정보

1일 섭취량: 1포 (10mL)		
1일 섭취량 당	함량	% 영양성분 기준치
열량	5 kcal	
탄수화물	1 g	0%
당류	1 g 미만	1%
단백질	0 g	0%
지방	0 g	0%
나트륨	5 mg	0%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	진세노사이드 Rg1+Rb1+Rg3 <b>11.6mg</b>	

\*% 영양성분 기준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임

---

#### 원료명 및 함량

홍삼농축액(6년근, 고형분 64%, 진세노사이드 Rg1+Rb1+Rg3 5.5mg/g, 국산) 30% (원료삼배합비율 6년근 홍삼 100%: 홍삼근 75%, 홍이삼25%), 정제수

■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 기억력개선, 향산화에 도움을 주는 홍삼의 기능성에 대해 광고하고 있음.



## 2. 기존 유용성 표시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 방법

### □ 기존 유용성 표시

- ✓ 기존 유용성표시는 2008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간한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 광고 인정범위 지침서」에 준하여 표시 광고하던 내용을 말함
- ✓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 광고 인정범위 지침서」의 주요 내용과 지침서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유용성 표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

### 1) 비타민 및 무기질

- 비타민 및 무기질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및 동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별표1에 따른다.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광고

나.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 특수용도식품(영아·유아, 병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으로 임산부·수유부·노약자, 질병 후 회복 중인 사람 또는 환자의 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라.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에 있는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내용의 표시·광고

- 별표1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 광고”는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식이섬유, 지방산을 의미하는 조항으로 건강기능식품에서 정하는 영양소의 기능성 내용이면 일반식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표시 광고할 수 있다.

## 2) 장건강

- 많은 발효유제품에서 “장건강” 관련 기능성 내용을 표시 광고할 수 있었다. 이들 장건강 내용은 대부분이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성 내용을 표시 광고하는 것으로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중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능성 원료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성 내용이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었으나 이번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확대되면서 “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내용이 추가되어 이전과 동일하게 표시 광고할 수 있다.

## 3) 위건강

- 많은 발효유제품에서 “장건강”과 유사하게 “위건강” 관련 기능성 내용을 표시 광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성 내용에는 위건강 관련 기능성 내용이 없으며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위건강을 장건강과는 다른 기능성 내용으로 간주하고 있어 별도로 관리한다.
- 고시 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3호 내용에 의하면 위건강 기능성은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호 중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체계적 고찰, SR: Systematic Review)을 통해 과학적 자료로 입증하여야 하는 사후 실증 기능성 내용으로 간주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위건강” 관련 기능성 내용을 표시 광고하려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능성 원료로 우선 식약처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4) 숙취해소

- 숙취해소와 관련한 기능성 표시 및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이전부터 사용해 오던 표시 및 광고이다. 숙취해소는 “위건강”과는 달리 건강기능식품에서 정하는 기능성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다. 따라서 동 고시에서는 2024년까지 허용하는 “위건강”과는 조금 다르게 간주한다.
- 숙취해소 관련 기능성은 우선 2024년 12월 31일까지 객관적 과학적 근거에 따라 표시한 경우는 기존 표시 광고 내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동 고시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3호 중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체계적 고찰, SR: Systematic Review)을 통해 과학적 자료로 입증하여야 하는 사후 실증 기능성 내용으로 간주된다. 사후 실증 기능성 내용은 과학적 근거를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체계적 고찰, SR: Systematic Review)) 갖추어 표시 광고할 수 있으나 식약처장이 요청하면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하는 “인체적용시험”이란 식품등의 표시·광고 내용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식품등이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인체적용시험은 의약품국제조화회의 임상시험관리기준(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zation Good Clinical Practice, ICH GCP)에 따라야 한다. ICH GCP 가이드라인에 따른다는 의미는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거친 프로토콜에 따라 시험이 진행되어야 하며 시험의 진행 과정, 결과 등은 모두 우수임상시험관리기준인 Good Clinical Practice에 준해서 시험이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인체적용시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되는 인체적용시험은 WHO에서 운영하는 CRIS 시스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에 프로토콜을 등록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는 피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도출되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이다.
- 체계적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이란 관련된 인체적용시험결과들을 모두 검토한 후 연구의 유형에 따라 우선 분류하고, 개별 연구의 질(quality)를 각각 평가하고 모두 종합하여 연구의 일관성, 연구의 종합적인 숫자, 대상자 숫자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개별 전문가의 주관이 개입된 narrative review와는 다른 객관적으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도 이와 동등한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기능성원료를 배합하여 기능성을 표시하거나, 이에 합당하지 않아 이 고시에 따라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정도의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 3. 정성적 문헌고찰(SR)을 통한 기능성 입증 방법

“신의료기술평가 체계적 문헌고찰 지침, 한국보건의료연구원(2011) 발췌”

#### 1) 정성적 문헌고찰이란

정성적문헌고찰 또는 체계적 문헌고찰이라 불리는 systematic review의 경우 해당 분야에 관한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동료평가(peer-review)된 학술논문(1차 연구)을 주요한 근거로 포함시키되, 외에도 입수 가능한 문헌(미공표 논문 등)을 폭넓게 확보하여 평가할 수 있다. 문헌검색은 언어 편향(특히 영어에 대한 편향)을 배제하기 위해 국내 학술문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한국어 논문도 검색한다. 국외에서 실시된 연구에 대해서는 한국인에 대한 외삽성(外挿性, Extrapolation)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헌고찰은 결과의 객관성,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색조건이나 포함·제외 문헌정보 등 결과를 도출하기까지의 절차, 의뢰자(기업, 기관 등) 및 이해상충에 관한 정보, 출판 상의 편향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 자료에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문헌고찰의 결과 동료평가된 학술논문이 없을 경우 또는 표시하고자 하는 기능에 대해 동료평가된 학술논문이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경우 가능성 표시를 위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간주되며 기능성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복수의 기능성 관련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해 각각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기능성에 대해 상호작용 등의 유무가 확인되었다는 전제 하에 성분 별로 기능성을 실증하면 된다.

아울러 기능성 관련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한 문헌고찰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문헌고찰에 관한 성분과 최종제품의 성분 간의 동등성에 대해 고찰되어야 한다.

관찰연구는 원칙적으로 종단연구(코호트연구나 증례대조연구 등)만을 대상으로 한다. 관찰연구 중 횡단연구는 인과관계의 역전이 발생하기 쉬워 횡단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능성 관련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한 인체적용시험과 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능성을 실증해야 한다.

## 2) 체계적 문헌고찰 절차

체계적 문헌고찰은 평가계획서 작성, 평가를 위한 구체적 질문(PICO) 만들기, 관련 문헌 찾기, 적절한 문헌의 선택, 문헌의 질평가, 자료의 추출, 결과의 합성 순서로 진행된다.

## 3) 평가계획서 작성

평가계획서는 실제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 구체적인 질문이나 문헌선택 방법 및 선택기준 등을 명확히 기술해 주고 평가 수행과정을 자세히 제공함으로써 편중이 적은 근거를 얻기 위한 노력이다. 평가계획서에는 평가배경, 평가문제와 PICO, 평가방법, 문헌선택 및 배제 기준, 문헌의 질평가 도구와 방법, 자료추출 전략, 예정 평가기간의 내용이 담겨있어야 한다.

## 4) PICO 선정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질문을 만드는 것은 체계적 문헌고찰의 가장 기초적인 고정이다. 구체적인 질문을 위해서는 PICO라는 형식을 이용한다.

- Participants (연구대상자)
- Intervention (연구방법)
- Comparator (또는 control; 비교자)
- Outcome (결과)

## 5) 문헌검색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에서 명확하고 재현 가능한 검색전략으로 검색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 6) 문헌선택

명확한 선택/배제 기준에 따라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적절한 문헌을 찾기 위함이다. 문헌선택기준은 선택과 배제기준을 모두 각각 제시해야 하며, 평가 목적에 따라 논리적으로 구성된다. 문헌을 선택할 때 설정된 배제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 되면 해당 문헌은 배제해야 하며, 선택기준은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두 명의 평가자가 참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한 뒤 일치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전문가의 자문과 함

게 최종 결정한다.

#### 7) 문헌의 질평가

문헌의 질평가는 각각의 문헌이 주는 정보의 질(quality)를 가리는 일이다. 모든 문헌의 주장이 다 타당성이 있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연구는 객관적인 결과에 영향을 주는 편중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결과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문헌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질 평가는 주로 연구유형, 연구방법에 초점을 두며, 연구 결과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편중이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두 명의 평가자가 참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한 뒤 일치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최종 결정한다.

#### 8) 자료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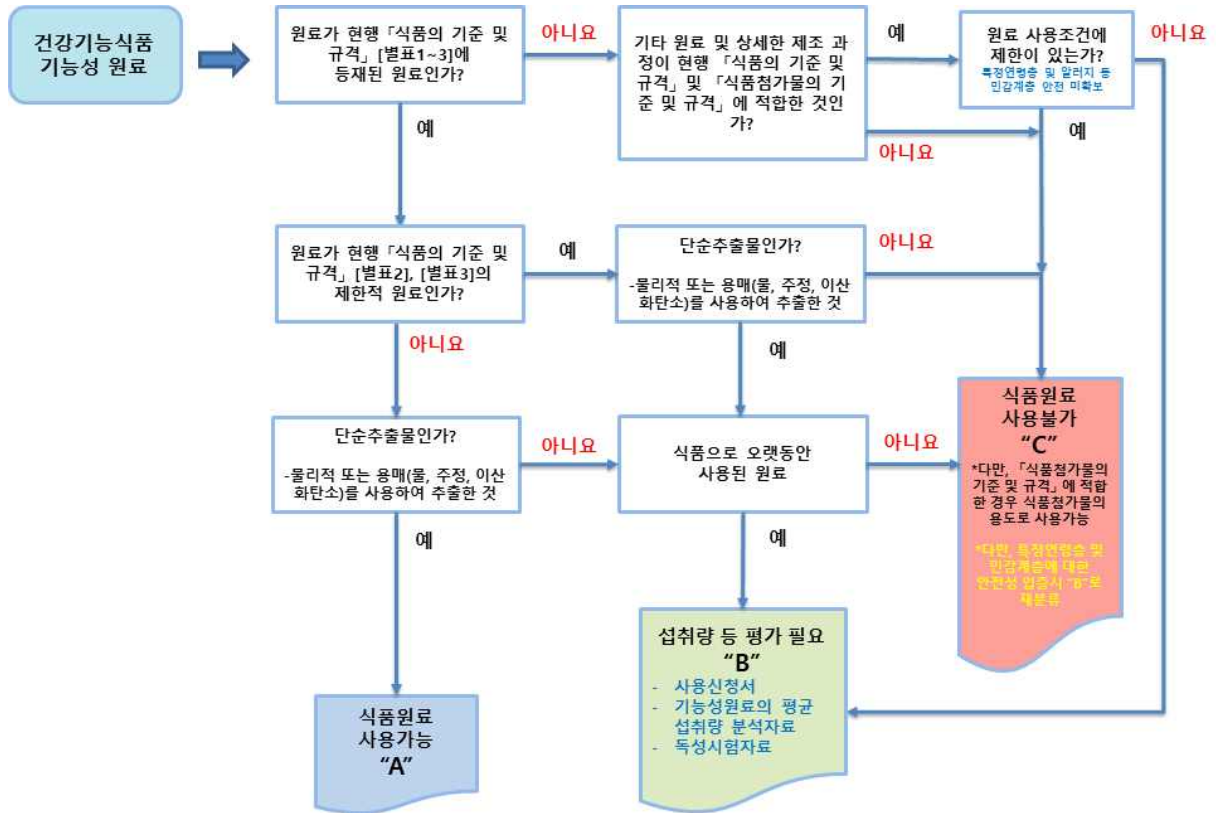
자료추출은 일차 문헌에 보고된 정보 중 평가목적에 따라 필요한 것을 발췌하는 것으로 주관적인 과정일 수 있어 과오를 저지르기 용이하다. 따라서 이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편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료추출을 위한 계획서를 만들어야 하며, 계획서는 우선 표본을 선정하여 일차문헌에서 추출할 모든 항목을 목록화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두 명의 평가자가 참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한 뒤 일치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최종 결정한다.

#### 9) 결과합성

결과를 합성하는 것은 개별적인 문헌들의 근거표(evidence table)를 작성함으로 시작된다. 근거표에는 연구유형, 연구의 질 평가결과, 연구대상의 성격(대상자 수 등), 비료자, 결과 측정지표, 연구의 규모 등 연구에서 제시된 사항들을 기술할 수 있으나 요약해서 언급해야 하므로 평가목적에 따라 중요한 사항들을 제시한다. 문헌들을 통합하는 방법은 평가목적이나 연구유형 및 측정된 결과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질적 체계적 문헌고찰과 계량적 체계적 문헌고찰에 속하는 메타분석과 결정분석(decision analysis) 등이 있다.

#### 4. 개별인정원료 등록 업체의 일반식품 원료 등록 절차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식품등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의사결정도를 적용해봐야 한다.



1. 우선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이어야 한다.
2. 그 기능성원료가 현행 식품원료로 제한적 사용이 없는 원료에 해당되어야 한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3]에 등재되어 있는 원료이어야 함)
  - 2-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3]에 등재되어 있는 원료이나 [별표2], [별표3]의 제한적 원료가 아니어야 함.
  - 2-2. 2-1에 해당되고 물리적으로 단순한 가공 또는 물, 주정, 이산화탄소만을 사용하여 단순하게 추출한 원료임

식품원료로 바로 사용 가능한 A에 해당됨



2-3. 2-1에 해당되나 물리적으로 단순한 가공 또는 물, 주정, 이산화탄소만을 사용하여 단순하게 추출한 원료가 아님

2-4. 2-3에 해당되나 식품으로 오랜기간 국내에서 사용한 원료임

**섭취량 등 평가가 필요한 B에 해당됨\***

2-5. 2-3에 해당되나 식품으로 오랜기간 국내에서 사용한 원료가 아님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능 C에 해당됨**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3]에 등재되어 있는 원료이나 [별표2], [별표3]의 제한적 원료에 해당됨

3-1. 이 소재를 물리적으로 단순한 가공 또는 물, 주정, 이산화탄소만을 사용하여 단순하게 추출한 원료임

3-2. 식품으로 오랜기간 국내에서 사용한 원료임

**섭취량 등 평가가 필요한 B에 해당됨\***

3-3. 3-1에 해당되나 식품으로 오랜기간 사용한 원료가 아님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능 C에 해당됨**

3-4. 3에 해당되는 원료이기는 하나 물리적으로 단순한 가공 또는 물, 주정, 이산화탄소만을 사용하여 단순하게 추출한 원료가 아님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능 C에 해당됨**

4.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3]에 등재되어 있는 원료가 아님

4-1. 식품 원료로 등재된 원료가 아니라도 상세한 제조공정이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원료이거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원료임

4-2. 원료의 사용조건에 제한이 없음

섭취량 등 평가가 필요한 B에 해당됨\*

4-3. 원료의 사용조건에 제한이 있음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능 C에 해당됨

4-4. 식품 원료로 등재된 원료가 아니라도 상세한 제조공정이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원료이거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도 적합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식품원료임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능 C에 해당됨

## [섭취량평가 방법]

- 신청원료의 사용용도(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을 제안하고, 해당 원료에 대한 연령별 평균 섭취량, 고 소비군의 극단 섭취량을 계산한다.
  - 사용대상식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식품의 유형으로 정해야 한다.
- 섭취량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식품수급표(농촌경제연구원)’, ‘식품성분표 (농촌진흥청)’ 등의 자료로 한국인에 대한 자료를 우선으로 하며,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외국의 자료 혹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문헌을 이용해야 한다.

### [예시]

신청원료 A 추출분말을 과일음료의 원료로 500 mg/100g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 독성시험을 통한 신청원료 A 추출분말의 최대무독성량(NOAEL,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값을 확인하고 일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 값을 구한다.

- A 추출분말의 NOAEL 값이 5.0 g/kg·bw/day 라면, ADI 값은 NOAEL 값을 안전계수 100으로 나눈 0.050 g/kg·bw/day이다.

$$ADI = \frac{NOAEL}{\text{안전계수}} = \frac{5.0 \text{ g/kg}\cdot\text{bw/day}}{10(\text{종간차이}) \times 10(\text{개체차이})}$$

\* 안전계수는 동물실험에 의한 독성시험의 결과 얻어진 NOAEL 값을 인간에게 적용하여 안전허용량을 구하는 경우 사용되는 것으로 동물 종 사이의 감수성의 차이를 1/10, 인간에 있어서의 감수성의 차이를 1/10로 함. 독성시험 방법, 결과 등에 따라 추가적인 안전계수를 더할 수 있음.

2. 제안된 식품원료 A 추출분말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평균 및 극단섭취군(상위 95%)의 식품원료 A 추출분말 섭취량을 계산한다.

- 국내 인구집단의 과일음료의 섭취량 자료를 구한다(연령별·성별 과일음료의 평균섭취량 및 극단섭취량(상위 95%)).

표 1. 연령과 성별에 따른 한국인 평균 및 극단섭취군(상위 95%)의 과일음료 섭취량  
(단위: g/person/day, 출처: 국민건강영양조사 2018)

연령 (세)	남성		여성	
	평균섭취량	극단섭취량	평균섭취량	극단섭취량
1-2	4.28	0	13.16	115.6
3-5	12.8	112.76	12.65	88.43
6-11	16.16	124.72	20.48	155.62
12-18	20.63	189.79	26.85	200.32
19-29	23.14	198.05	19.04	173.9
30-49	16.73	155.14	10.56	0
50-64	6.49	0	7.69	0
>65	8.15	0	5.45	0
평균	14.27	103.48	11.95	81.34

- 식품원료 A 추출분말에 대한 일일섭취량을 계산한다. 일일섭취량은 과일음료의 섭취량 × 음료 중 식품원료 A 추출분말의 사용량 (500 mg/100g)의 식으로 구한다. 표 1을 사용하여 계산한 식품원료 A 추출분말의 일일섭취량은 표 2와 같다.

표 2. 연령과 성별에 따른 한국인 평균 및 극단섭취군(상위 95%)의 A 추출분말의 일일섭취량

(단위: g/person/day)

연령 (세)	남성		여성	
	평균섭취량	극단섭취량	평균섭취량	극단섭취량
1-2	<b>0.02</b>	<b>0.00</b>	0.07	0.58
3-5	0.06	0.56	0.06	0.44
6-11	0.08	0.62	0.10	0.78
12-18	0.10	0.95	<b>0.13</b>	<b>1.00</b>
19-29	0.12	0.99	0.10	0.87
30-49	0.08	0.78	0.05	0.00
50-64	0.03	0.00	0.04	0.00
>65	0.04	0.00	0.03	0.00
평균	0.07	0.52	0.06	0.41

- 식품원료 A 추출분말의 연령별 평균섭취량은 0.02 ~ 0.13 g/person/day이며, 극단섭취량(상위 95%)은 0.00 ~ 1.00 g/person/day이다.

3. 국내 과일음료 섭취자 집단의 체중자료를 구하고, 식품원료 A 추출분말의 상한섭취량(= ADI × 평균체중)을 계산한다(표 3).

표 3. 연령과 성별에 따른 한국인의 식품원료 A 추출분말의 상한섭취량

(단위: g/person/day)

연령 (세)	남성		여성	
	평균체중(kg)	상한섭취량	평균체중(kg)	상한섭취량
1-2	12.02	0.60	11.9	0.60
3-5	17.59	0.88	17.49	0.87
6-11	33.77	1.69	32.41	1.62
12-18	61.09	3.05	53.06	2.65
19-29	74.02	3.70	55.44	2.77
30-49	72.99	3.65	59.52	2.98
50-64	68.03	3.40	58.53	2.93
>65	63.54	3.18	55.15	2.76
평균	64.86	3.24	53.99	2.70

4. 식품원료 A 추출분말의 상한섭취량에 대한 평균섭취량 및 극단섭취량(상위 95%)의 비율을 구한 후 평균 및 극단섭취량이 상한섭취량을 상회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 상한섭취량에 대한 평균섭취량의 비율 및 극단섭취량(상위 95%)의 비율은 남성(1~2세)의 경우 평균섭취량(0.02)/상한섭취량(0.60)×100이며, 연령별·성별에 따른 비율을 구한 결과는 표 4과 같다.

표 4. 연령과 성별에 상한섭취량에 대한 평균섭취량 및 극단섭취량(상위 95%)의 비율  
(단위: %)

연령 (세)	남성		여성	
	상한섭취량에 대한 평균 섭취량의 비율	상한섭취량에 대한 극단 섭취량의 비율	상한섭취량에 대한 평균 섭취량의 비율	상한섭취량에 대한 극단 섭취량의 비율
1-2	3.56	0.00	11.06	97.14
3-5	7.28	64.10	7.23	50.56
6-11	4.79	36.93	6.32	48.02
12-18	3.38	31.07	5.06	37.75
19-29	3.13	26.76	3.43	31.37
30-49	2.29	21.25	1.77	0.00
50-64	<b>0.95</b>	0.00	1.31	0.00
>65	1.28	0.00	0.99	0.00
평균	2.20	15.95	2.21	15.07

- 식품원료 A 추출분말의 연령별 평균섭취량은 상한섭취량 대비 약 0.95 ~ 11.06%이고, 연령별 극단섭취량(상위 95%)은 상한섭취량 대비 0 ~ 97.14 %이다. 따라서, 설정한 사용량은 상한섭취량을 상회하지 않으므로 안전성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다.

[소재 유통기업, 기능성 식품연구소 등 제품 개발 지원 관련 유관기관 정보]

□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유통기업

업체명	일동바이오사이언스(주)
연락처	031-646-3114
소재지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 17 일동바이오사이언스(주) 평택공장
홈페이지	<a href="http://www.ildongbioscience.com/kor/main/main.id">http://www.ildongbioscience.com/kor/main/main.id</a>
업종	전문제조업, 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개요	개별인정형 유산균 및 화장품 소재 등 개발

업체명	금사머쉬앤팜
연락처	031-885-0158, 2380
소재지	경기 여주군 금사면 금사리 278
홈페이지	-
업종	전문제조업
개요	기능성 원료 유통

업체명	(주)디에스엠뉴트리션코리아
연락처	02-6244-6021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91 구산타워 3층
홈페이지	<a href="http://www.dsm.com">http://www.dsm.com</a>
업종	수입업
개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원료 유통

업체명	(주)삼정
연락처	02-881-0632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561 3층
홈페이지	<a href="http://www.samjungflavor.co.kr">http://www.samjungflavor.co.kr</a>
업종	수입업, 일반판매업
개요	허브 추출물(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원료) 공급 및 유통

업체명	(주)뉴메드
연락처	02-564-9140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88 민족통일빌딩 14층
홈페이지	<a href="http://www.neumed.co.kr/">http://www.neumed.co.kr/</a>
업종	벤처제조업, 수입업, 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개요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원료(어린이 키성장 황기추출물 등 복합물 (HT042), 알코올성 간 손상 개선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관절기능개선 가시오갈피 등 복합추출물, 기억력 개선 인삼가시오갈피 등) 유통

업체명	씨티씨바이오
연락처	070-4033-0100
소재지	서울 송파구 중대로 296 (오금동) 샅보빌딩
홈페이지	<a href="http://www.ctcbio.com">http://www.ctcbio.com</a>
업종	전문제조업, 수입업, 유통전문판매업
개요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유통

업체명	(주)세일인터내셔널코리아
연락처	02-581-0141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69 세일빌딩
홈페이지	<a href="http://www.seilint.com/">http://www.seilint.com/</a>
업종	수입업
개요	밀크씨슬추출분말,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수용성/불용성), 마리골드추출물(루테인)(오일), 쏘팔메토열매추출물(오일), 스쿠알렌, 아스타잔틴, 코엔자임Q10 등 건강기능식품(원료), 일반식품(원료), 식품첨가물 유통

업체명	(주)미래바이오텍
연락처	031-541-3103
소재지	경기 포천시 소흘읍 무봉로 112 미래바이오텍
홈페이지	<a href="http://www.mrchito.com/kor/">http://www.mrchito.com/kor/</a>
업종	수입업, 일반판매업
개요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 유통

업체명	(주)지에프씨생명과학
연락처	031-5183-5555
소재지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823 (영천동) 17층
홈페이지	<a href="http://www.gfcos.co.kr/">http://www.gfcos.co.kr/</a>
업종	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개요	천연 소재를 활용한 화장품 및 식품 원료, 개별인정형 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 및 유통

업체명	듀폰코리아(주)
연락처	02-2222-5409
소재지	서울 강남구 논현로 430 아세아타워 5층
홈페이지	<a href="https://www.dupontnutritionandhealth.com/">https://www.dupontnutritionandhealth.com/</a>
업종	수입업, 유통전문판매업
개요	dietary supplement, 기능성식품 원료, 식품첨가물 등 유통

업체명	(주)아모레퍼시픽
연락처	031-899-2610
소재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00 (한강로2가) 3-14층
홈페이지	<a href="http://www.amorepacific.com">http://www.amorepacific.com</a>
업종	수입업, 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개요	홍삼, 녹차추출물, 대두배아열수추출물, 비타민미네랄 등 유통



업체명	주영엔에스(주)
연락처	02-3486-5727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송파테라타워2 A동 1404-1410호
홈페이지	<a href="http://www.juyeongns.com">http://www.juyeongns.com</a>
업종	수입업, 일반판매업
개요	개별인정형(보이차추출물, 그린커피빈추출물, 유단백추출물, 피쉬콜라겐펩타이드) 기능성원료, 고시형(EPA 및 DHA 함유 유지, 스피루리나, 헤마토코쿠스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쏘팔메토열매추출물,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홍경천추출물, 밀크씨슬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기능성원료 유통

업체명	(주)에이치엘사이언스
연락처	031-421-9903
소재지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89
홈페이지	<a href="http://hlscience.com">http://hlscience.com</a>
업종	전문제조업, 수입업, 유통전문판매업
개요	밀크씨슬추출물, 오메가-3, 인삼, 스피루리나, 홍삼 등 유통

업체명	콜마BNH(주)
연락처	043-535-6691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풍산단1길 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81 영림빌딩 4층
홈페이지	<a href="http://www.kolmarbnh.co.kr/">http://www.kolmarbnh.co.kr/</a>
업종	전문제조업
개요	비타민, HCA, 은행추출물 등, 체중조절용 원료 유통

업체명	대한캠텍(주)
연락처	02-495-1076
소재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707호
홈페이지	<a href="http://www.dhchemtech.com/">http://www.dhchemtech.com/</a>
업종	수입업, 유통전문판매업
개요	개별인정형 원료(CGV-7, Lutein & Zeaxanthin),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고시형 원료(밀크씨슬추출물, 곤약감자추출물 등), 간 건강/숙취해소 원료 등 유통

업체명	(주)내츄럴엔도텍
연락처	02-2082-3139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58 씨즈타워 301호
홈페이지	<a href="http://www.naturalendo.co.kr">http://www.naturalendo.co.kr</a>
업종	벤처제조업, 수입업, 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개요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오메가-3 유통

업체명	(주)애니닥터헬스케어
연락처	041-548-3159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79번길 20 벤처산학협력관 501호
홈페이지	-
업종	벤처제조업, 수입업
개요	달맞이꽃종자추출물, 대두발효추출물, 더덕추출물 등 유통

업체명	에이씨앤코리아(유)
연락처	02-3468-0700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38 12층
홈페이지	<a href="http://www.acnkr.co.kr">http://www.acnkr.co.kr</a>
업종	수입업, 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개요	오메가-3, 밀크씨슬추출물, 비타민, 미네랄, 홍삼 등 유통

업체명	(주)세광에스티코퍼레이션
연락처	02-804-5744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더루벤스밸리 1502호
홈페이지	<a href="http://www.sekwangcorp.co.kr/">http://www.sekwangcorp.co.kr/</a>
업종	수입업, 일반판매업
개요	강황추출물 유통

업체명	서울프로폴리스(주)
연락처	042-862-4888
소재지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1422번길 7 (방현동)
홈페이지	<a href="http://www.probee.kr/main/main.php">http://www.probee.kr/main/main.php</a>
업종	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
개요	프로폴리스추출물, 프로폴리스 분말 등 유통

업체명	(주)뉴트라팜텍
연락처	031-731-8516
소재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A동 905호
홈페이지	<a href="http://www.nutrpharm.co.kr/ko/">http://www.nutrpharm.co.kr/ko/</a>
업종	벤처제조업, 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개요	EPA 및 DHA 함유 유지, 코엔자임Q10, 마리골드꽃종자추출물, 보라지유(감마리놀렌산) 유통

업체명	농업회사법인 한가람지에프(주)
연락처	02-2043-7141
소재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역테라타워 B동 621-622호
홈페이지	-
업종	수입업, 유통전문판매업
개요	씨트러스추출물(천연감미료), 폴리덱스트로스, 유기농검은깨페이스트

□ 기능성 식품 개발 지원 기관

기관명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연락처	063-259-3044 / 3048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20 임상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	<a href="http://www.ctcf2.com/">http://www.ctcf2.com/</a>
개요	기능성식품임상시험 수탁 · 자문, 기능성 검증 수탁 등 사업

기관명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연락처	031-628-2400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삼평동 694-1) 코리아바이오 파크 A동 102호
홈페이지	<a href="https://www.khsi.re.kr/">https://www.khsi.re.kr/</a>
개요	식품, 건강기능식품, 첨가물, 기구용기, 수산물, 축산물, 화장품, 방사 선조사식품 등 위탁시험검사와 위생사업, 기능성원료 개별인정 등 연 구 사업

기관명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연락처	063-720-2500
소재지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홈페이지	<a href="http://www.foodpolis.kr/">http://www.foodpolis.kr/</a>
개요	건강기능식품 인정 시 필요한 원료 표준화·규격화 지원, 과학적 뒷받 침을 위한 다양한 기능성 평가 지원, 안전성 평가 지원, 인체적용시 험 수행 지원 등

기관명	한국식품산업협회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연락처	02-3470-8200
소재지	경기도 의왕시 봇들로 50
홈페이지	<a href="http://www.kafri.or.kr/kafri/main.php">http://www.kafri.or.kr/kafri/main.php</a>
개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검사

기관명	(사)한국인삼제품협회
연락처	02-3672-8502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6가길 8
홈페이지	<a href="http://www.koreaginseng.or.kr/sub/main.asp">http://www.koreaginseng.or.kr/sub/main.asp</a>
개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중 인삼 · 홍삼제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검사

기관명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연락처	061-339-1202
소재지	전남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30-5(동수동)
홈페이지	<a href="http://www.jbf.kr/main/main.action">http://www.jbf.kr/main/main.action</a>
개요	자가품질 위탁검사, 품질관리 · 영양성분 · 기능성물질 분석, 유통기한 설정 실험 검사

기관명	KOTITI시험연구원
연락처	02-3451-7446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1번길 29 2층
홈페이지	<a href="http://www.kotiti-global.com/ko/index.do">http://www.kotiti-global.com/ko/index.do</a>
개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재, 축산물 등의 관리항목에 대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시험 검사 실시.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분석 관련 기술서비스 제공

기관명	(주)한국분석기술연구원
연락처	051-466-1231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대영로267 (초량동 해광빌딩)
홈페이지	<a href="http://www.katri.co.kr/">http://www.katri.co.kr/</a>
개요	건강기능식품 품목허가 시 필요한 기준 및 규격 검사 서비스와 함께 원료 성분의 개별인정에 필요한 근거 자료 제공

기관명	한국표준시험분석연구원(주)
연락처	031-493-3547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50 (고잔동, 씨티프라자5층)
홈페이지	<a href="http://www.ianf.co.kr/html/index.php">http://www.ianf.co.kr/html/index.php</a>
개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검사

## 5. 해외 유사 사례 조사 등을 통한 식품 유형별 제품 개발 가이드 제시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DHA/EPA, inulin, GABA, 베타글루칸, 식물성스테롤, 이소플라본, 루테인, 자일리톨, 프로바이오틱스 등에 대하여 식품유형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당국가는 다음과 같다. 또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음료류, 과자류, 유가공품, 면류, 조미식품(카레 등), 농산가공품, 즉석식품류 등의 식품유형별 주요한 사례를 참고하여 제품 개발 자료로 활용한다.

### 1)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명칭	국가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과자	스낵 과자	일본
2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과자	생과자 (젤리)	일본
3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과자	생과자	일본
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과자	서양 생과자	일본
5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빵류	빵	일본
6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캔디류	식이섬유 함유 젤리형 식품	일본
7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캔디류	젤리 캔디	일본
8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캔디류	캔디	일본
9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캔디류	난소화성 덱스트린함유식품	일본
10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캔디류	젤리	일본
11	두부류	-	가공두부	언 두부(조미료付き)	일본
12	면류	-	생면	생 우동(특면 사누키 우동)	일본
13	면류	-	숙면	냉동 식품 데친 우동	일본
14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일본
15	수산가공식품류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해조류가공품(가미모즈쿠(もずく, 해조류의 일종))	일본
16	유가공품	발효유류	발효유	발효유	일본
17	음료류	과일·채소류음료	과·채음료	20%혼합 과즙이 들어간 음료	일본
18	음료류	과일·채소류음료	농축과·채즙	케일분말가공식품	일본
19	음료류	과일·채소류음료	과·채음료	야채·과실 혼합 음료	일본
20	음료류	과일·채소류음료	과·채음료	야채·과실 혼합 음료	일본
21	음료류	과일·채소류음료	과·채음료	야채 혼합 음료	일본
22	음료류	과일·채소류음료	과·채음료	야채 혼합 음료	일본
23	음료류	과일·채소류음료	과·채음료	감주	일본
24	음료류	과일·채소류음료	과·채음료	야채·과실혼합음료	일본
25	음료류	기타음료	음료베이스	청량음료	일본
26	음료류	기타음료	음료베이스	분말 청량음료	일본
27	음료류	다류	고형차	곤약 서류 분말 추출물함유가공식품	일본
28	음료류	다류	고형차	분말 청량음료	일본
29	음료류	다류	고형차	식물성 기름가공식품	일본
30	음료류	다류	고형차	식이섬유가공식품	일본
31	음료류	다류	고형차	케일분말가공식품	일본
32	음료류	다류	액상차	녹차(청량음료)	일본
33	음료류	다류	액상차	도토리 차	일본
34	음료류	다류	액상차	식물성 기름가공식품	일본
35	음료류	다류	액상차	식이섬유가공식품	일본
36	음료류	다류	액상차	우롱차(청량음료)	일본
37	음료류	다류	액상차	청량음료수	일본
38	음료류	다류	액상차	청량음료수(식육차)	일본
39	음료류	다류	액상차	혼합 녹차(청량음료)	일본
40	음료류	다류	액상차	혼합 보리차(청량음료수)	일본
41	음료류	다류	액상차	혼합 울무차(청량음료)	일본
42	음료류	다류	액상차	혼합홍차(청량음료수)	일본
43	음료류	다류	침출차	우롱차 엑기스 함유 식물성 기름가공식품	일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명칭	국가
44	음료류	커피	커피	분말 청량음료(커피 조정 제품)	일본
45	음료류	커피	커피	커피분말가공식품	일본
46	음료류	커피	커피	커피	일본
47	음료류	탄산음료류	탄산음료	탄산음료	일본
48	조미식품	소스류	소스	유화 액체 드레싱	일본
49	조미식품	소스류	소스	대맥 조리품	일본
50	조미식품	소스류	소스	미트 소스	일본
51	조미식품	소스류	소스	파스타 소스	일본
52	조미식품	소스류	소스	미트 소스	일본
53	조미식품	식초	회석초산	청량음료	일본
54	즉석식품류	생식류	생식제품	장명초 가공식품	일본
55	즉석식품류	생식류	생식제품	야채 · 과일 혼합 음료	일본
56	즉석식품류	생식류	생식제품	식이섬유가공식품	일본
57	즉석식품류	생식류	생식제품	난소화성 텍스트린 함유 유산균액기스가공식품	일본
58	즉석식품류	생식류	생식제품	난소화성 텍스트린 · GABA 함유 유산균액기스가공식품	일본
59	즉석식품류	즉석섭취 · 편의식품류	즉석조리식품	카레	일본
60	즉석식품류	즉석섭취 · 편의식품류	즉석조리식품	건조 스프(포타주)	일본
61	즉석식품류	즉석섭취 · 편의식품류	즉석조리식품	건조 스프(콘소메)	일본
62	즉석식품류	즉석섭취 · 편의식품류	즉석조리식품	스프	일본
63	즉석식품류	즉석섭취 · 편의식품류	즉석조리식품	스프	일본
64	즉석식품류	즉석섭취 · 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밥류(죽)	일본
65	즉석식품류	즉석섭취 · 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돈부리(親子どんのもと) (레토르트 식품)	일본
66	즉석식품류	즉석섭취 · 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즉석밥(백미)	일본
67	즉석식품류	즉석섭취 · 편의식품류	즉석조리식품	카레	일본
68	즉석식품류	즉석섭취 · 편의식품류	즉석조리식품	건조 스프	일본
69	즉석식품류	즉석섭취 · 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대맥 조리품	일본
70	즉석식품류	즉석섭취 · 편의식품류	즉석조리식품	콩기름 스프용 스프 베이스(스트레이트 타입)	일본
71	즉석식품류	즉석섭취 · 편의식품류	즉석조리식품	양파스프용 스프 베이스(스트레이트 타입)	일본
72	즉석식품류	즉석섭취 · 편의식품류	즉석조리식품	버섯스프용 스프 베이스(스트레이트 타입)	일본
73	즉석식품류	즉석섭취 · 편의식품류	즉석조리식품	꼬리곰탕 스프용 스프 베이스(스트레이트 타입)	일본
74	즉석식품류	즉석섭취 · 편의식품류	즉석조리식품	포도피 용 스프 베이스(스트레이트 타입)	일본
75	즉석식품류	즉석섭취 · 편의식품류	즉석조리식품	즉석미소국	일본
76	즉석식품류	즉석섭취 · 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대맥 조리품	일본
77	즉석식품류	즉석섭취 · 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곤약 리조또(치즈)	일본
78	즉석식품류	즉석섭취 · 편의식품류	즉석조리식품	곤약 리조또(토마토)	일본
79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초콜릿류	밀크초콜릿	초콜렛	일본
80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초콜릿류	초콜릿	초콜렛	일본



	
일본 - 음료	일본 - 과자
	
일본 - 유가공품	일본 - 카레
	
일본 - 농산가공품	일본 - 즉석식품

## 2) DHA, EPA 적용 사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명칭	국가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캔디류	라포마 추출물가공식품	일본
2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과자	구운 과자	일본
3	수산가공식품류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참치 유지(플레이크)	일본
4	수산가공식품류	어육가공품류	기타 어육가공품	(블록)생 식용 갯방어 껍질 없는 블록 (슬라이스)생 식용 갯방어 슬라이스	일본
5	수산가공식품류	어육가공품류	기타 어육가공품	고등어 미소니(みそ煮)	일본
6	수산가공식품류	어육가공품류	기타 어육가공품	꽂치 꼬치구이	일본
7	수산가공식품류	어육가공품류	기타 어육가공품	다랑어유절임·플레이크	일본
8	수산가공식품류	어육가공품류	기타 어육가공품	말린 멸치 류	일본
9	수산가공식품류	어육가공품류	기타 어육가공품	반찬(다랑어가공품)	일본
10	수산가공식품류	어육가공품류	기타 어육가공품	연어 플레이크	일본
11	수산가공식품류	어육가공품류	기타 어육가공품	참치 유지(플레이크)	일본
12	수산가공식품류	어육가공품류	기타 어육가공품	참치 타다끼(소스 포함)	일본
13	수산가공식품류	어육가공품류	어묵	구운 치쿠와(어육 반죽 제품)	일본
14	수산가공식품류	어육가공품류	어묵	구운 치쿠와(어육 반죽 제품)	일본
15	수산가공식품류	어육가공품류	어묵	구운 어묵(어육 반죽 제품)	일본
16	수산가공식품류	어육가공품류	어육반제품	어육 반죽 제품	일본
17	수산가공식품류	어육가공품류	어육소시지	어육 소시지	일본
18	수산가공식품류	어육가공품류	연육	고등어 수전(水煮)	일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명칭	국가
19	수산가공식품류	젓갈류	젓갈	염장 청어알 불린 것 (水戻し品, soaking)	일본
20	수산가공식품류	젓갈류	젓갈	연어 알 간장 절임	일본
21	수산물	어류	해양어류	생식용 방어(양식)	일본
2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소시지류	소시지	포크 소시지(블로냐)	일본
23	유가공품	발효유류	발효유	발효유	일본
24	유가공품	가공유류	강화우유	유(乳)음료	일본
25	유가공품	가공유류	강화우유	유음료	일본
26	음료류	기타음료	음료베이스	청량음료	일본
27	음료류	과일·채소류음료	과·채주스	12%혼합 과즙이 들어간 음료	일본
28	음료류	두유류	가공두유	청량음료	일본
29	음료류	발효음료류	유산균음료	유제품유산균음료	일본
30	음료류	발효음료류	유산균음료	유제품유산균음료	일본
31	음료류	두유류	가공두유	청량음료	일본
32	음료류	발효음료류	유산균음료	유제품유산균음료	일본
33	조미식품	소스류	소스	분리액형 드레싱	일본
34	즉석식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정어리 미소니	일본
35	즉석식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정어리맛	일본
36	즉석식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조리식품	즉석스프	일본
37	즉석식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조리식품	스프	일본
38	즉석식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우영조림	일본
39	즉석식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툇 조림	일본
40	즉석식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무말랭이	일본
41	즉석식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치쿠젠니(筑前煮)	일본
42	즉석식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냉동 피쉬 햄버그(명태)	일본
43	즉석식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냉동 피쉬 햄버그	일본
44	즉석식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카레레토르트돈부리	일본
45	즉석식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중국식레토르트돈부리	일본
46	즉석식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일본식 반찬 세트	일본
47	즉석식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고등어 소금구이	일본
48	즉석식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고등어 조미액 절임	일본
49	즉석식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중국식레토르트돈부리	일본
50	즉석식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조리식품	스프	일본
51	즉석식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소보로 갈분 양념장 세트	일본
52	즉석식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친자오로스 (チンジャオロウスー)	일본
53	즉석식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회과육	일본
54	즉석식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조리식품	냉동 갈분 양념장 야키소바	일본
55	축산물	-	알류	계란	일본
56	조미식품	소스류	소스	Francesco Rinaldi Fortified DHA Omega 3 Garlic & Onion Pasta Sauce	유럽
57	수산가공식품류	기타수산물가공품	기타수산물가공품	Youngs Chip Shop 4 Omega 3 Fish Fillets	유럽
58	조미식품	소스류	소스	DHA Omega 3 Garlic & Onion Pasta Sauce	유럽

	
일본 - 즉석조리식품	일본 - 어육가공품
	
일본 - 카레	일본 - 과자
	
유럽 - 기타 수산물 가공품	유럽 - 소스

### 3) Inulin 적용 사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명칭	국가
1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초콜릿류	준초콜릿	준 초콜렛	일본
2	즉석식품류	즉석섭취 · 편의식품류	즉석조리식품	건조 스프(포타쥬)	일본
3	면류	-	생면	생면	일본
4	즉석식품류	즉석섭취 · 편의식품류	즉석조리식품	핫케익 믹스	일본
5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빵류	빵	일본
6	당류	당시럽류	당시럽류	시럽	일본
7	음료류	발효음료류	유산균음료	유제품유산균음료	일본
8	음료류	다류	분말차	inulin함유가공식품	일본
9	조미식품	소스류	소스	장국(회석용)	일본
10	유가공품	발효유류	발효유	프로바이오틱스 kefir	호주
11	유가공품	발효유류	발효유	프로바이오틱스 kefir	호주

	
일본 - 즉석 조리 식품	일본 - 초콜릿
	
일본 - 생면	호주 - 혼합음료

#### 4) GABA 적용 사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명칭	국가
1	곡류	-	-	가공미(加工米)	일본
2	곡류	-	-	가공미(加工米)	일본
3	곡류	-	-	가공미(加工米)	일본
4	곡류	-	-	발아현미	일본
5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과자	구운 과자	일본
6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과자	웨하스(구운 과자)	일본
7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과자	과자	일본
8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과자	쿠키	일본
9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과자	생과자	일본
10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과자	웨하스(구운 과자)	일본
1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과자	청량과자	일본
12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캔디류	캔디	일본
13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캔디류	츄잉검	일본
1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캔디류	GABA배합사탕	일본
15	면류	-	유당면	즉석 컵라면	일본
16	수산가공식품류	어육가공품류	어육소시지	어육 소시지	일본
17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베이컨류	베이컨	베이컨(슬라이스)	일본
18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햄류	햄	로스 햄(슬라이스)	일본
19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햄류	생햄	생햄(슬라이스)	일본
20	유가공품	발효유류	발효유	발효유	일본
21	음료류	과일·채소류음료	과·채음료	청량음료	일본
22	음료류	기타음료	혼합음료	청량음료	일본
23	음료류	다류	액상차	녹차(청량음료)	일본
24	음료류	다류	고형차	인스턴트 홍차	일본
25	음료류	다류	고형차	분말청량음료(인스턴트티믹스)	일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명칭	국가
26	음료류	다류	액상차	라벤더차(청량음료)	일본
27	음료류	다류	고형차	캔디	일본
28	음료류	다류	침출차	GABA가 들어간 녹차	일본
29	음료류	다류	침출차	GABA가 들어간 보이차	일본
30	음료류	커피	커피	분말 청량음료(인스텐트 커피믹스)	일본
31	음료류	커피	커피	커피음료	일본
32	음료류	커피	커피	커피	일본
33	음료류	커피	커피	분말 청량음료(인스텐트 커피믹스)	일본
34	음료류	커피	커피	유음료	일본
35	음료류	커피	커피	분말청량음료(커피조리품)	일본
36	음료류	탄산음료류	탄산음료	탄산음료	일본
37	조미식품	식초	희석초산	청량음료	일본
38	조미식품	식초	희석초산	청량음료(희석용)	일본
39	조미식품	향신료가공품	향신료조제품	조미액	일본
40	즉석식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GABA 함유 밥류(미즙(かゆ))	일본
41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초콜릿류	밀크초콜릿	유(乳)음료	일본
42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초콜릿류	밀크초콜릿	초콜렛	일본
4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초콜릿류	밀크초콜릿	조정 코코아	일본
44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초콜릿류	밀크초콜릿	초콜렛	일본
45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초콜릿류	밀크초콜릿	준 초콜렛	일본

	
일본 - 과자	일본 - 유탕면
	
일본 - 즉석식품	일본 - 초콜릿

5) 베타글루칸 적용 사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명칭	국가
1	곡류	-	-	일반 보리	일본
2	곡류	-	-	찐 보리	일본
3	곡류	-	-	정맥(精麦)	일본
4	곡류	-	-	일반 정맥(精麦)	일본
5	곡류	-	-	삶은 보리	일본
6	곡류	-	-	정맥 보리	일본
7	곡류	-	-	곡물	일본
8	농산가공식품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곡류가공품	정맥(精麦)	일본
9	농산가공식품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곡류가공품	일반 보리	일본
10	농산가공식품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곡류가공품	삶은 보리	일본
11	농산가공식품류	시리얼류	시리얼류	아침 식사 시리얼	일본
12	농산가공식품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곡류가공품	볶은대맥분	일본
13	즉석식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밥류(보리밥)	일본
14	즉석식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밥류(보리밥)	일본
15	즉석식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조리식품	정맥(精麦)	일본
16	즉석식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조리식품	핫케익믹스	일본
17	즉석식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조리식품	빵케익 믹스	일본
18	즉석식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즉석밥(참쌀보리현미ごはん)	일본
19	농산가공식품류	시리얼류	시리얼류	OatWell Hearts Bar	유럽
20	농산가공식품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곡류가공품	ATGO BETA 35+	유럽
2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빵류	빵류	Organic Oat Bread	유럽
22	농산가공식품류	시리얼류	시리얼류	Mornflake Superfast Oats	유럽
23	농산가공식품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곡류가공품	OatWell original	유럽
24	농산가공식품류	시리얼류	시리얼류	UncleTobysRolledOats	호주
25	농산가공식품류	시리얼류	시리얼류	Sunsol Oats	호주
26	농산가공식품류	밀가루류	밀가루	TheHealthyBaker PlainFlourwithOatBeta-Glucan	호주
27	농산가공식품류	시리얼류	시리얼류	Harraways Oat-activ® cranberry	호주
28	농산가공식품류	시리얼류	시리얼류	Harraways Oat-activ® Simply Original	호주
29	농산가공식품류	시리얼류	시리얼류	UncleTobysMilkOaties	호주

	
일본 - 즉석식품	일본 - 곡류 가공품
	
유럽 - 빵	호주 - 시리얼

6) 식물성스테롤 적용 사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명칭	국가
1	유가공품	발효유류	농후발효유	Danone Danacol Avena	유럽
2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류	과자류	Benecol RAISIN & HAZELNUT BARS	유럽
3	농산가공식품류	시리얼류	시리얼류	Sultana Bran® + with Cholesterol Lowering Plant Sterols	호주
4	유가공품	버터류	버터	Nuttelex Pulse Buttery Margarine Spread	호주

	
유럽 - 과자	유럽 - 발효유
	
호주 - 시리얼	호주 - 버터

7) 이소플라본 적용 사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명칭	국가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캔디류	캔디	일본
2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과자	구운 과자	일본
3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과자	발효대두식품(생과자)	일본
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과자	콩과자	일본
5	농산가공식품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곡류가공품	곡물 가루 함유 식품	일본
6	농산가공식품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곡류가공품	삶은 콩	일본
7	농산가공식품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두류가공품	대두 수전(水煮)	일본
8	농산가공식품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두류가공품	대두펩타이드(peptide)가공식품	일본
9	농산가공식품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두류가공품	반찬	일본
10	농산가공식품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두류가공품	볶은 흑대두	일본
11	농산가공식품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두류가공품	삶은 검은콩	일본
12	농산가공식품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두류가공품	삶은 대두	일본
13	농산가공식품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두류가공품	삶은 흑대두	일본
14	농산가공식품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두류가공품	수전(水煮)대두	일본
15	농산가공식품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두류가공품	蒸し대두	일본
16	농산가공식품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찐 검은콩	일본
17	두부류	-	두부	포장 두부	일본
18	유가공품	발효유류	발효유	발효유	일본
19	유가공품	발효유류	농후발효유	청량음료수	일본
20	음료류	과일·채소류음료	농축과·채즙	취꽃 추출물가공식품	일본
21	음료류	과일·채소류음료	과·채음료	청량음료수	일본
22	음료류	다류	고형차	취꽃 추출물가공식품	일본
23	음료류	다류	고형차	흑대두분말조제품	일본
24	음료류	다류	고형차	취꽃추출물가공식품	일본
25	음료류	다류	고형차	葛の花抽出物加工食品	일본
26	음료류	다류	고형차	취꽃 차	일본
27	음료류	다류	액상차	검은콩차(청량음료수)	일본
28	음료류	다류	침출차	취꽃 차	일본
29	음료류	다류	침출차	블렌드 차	일본
30	즉석식품류	생식류	생식제품	고구마 새싹 가공식품	일본
31	즉석식품류	생식류	생식제품	새싹보리 가공식품	일본
32	즉석식품류	생식류	생식제품	장명초 가공식품	일본
33	즉석식품류	생식류	생식제품	청량음료	일본
34	즉석식품류	생식류	생식제품	취꽃 추출물가공식품	일본
35	즉석식품류	생식류	생식제품	취꽃추출물함유가공식품	일본
36	즉석식품류	생식류	생식제품	케일가공식품	일본
37	즉석식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신선편의식품	발아대두	일본
38	즉석식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신선편의식품	유기발아대두	일본
39	즉석식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신선편의식품	발아대두	일본
40	채소류	-	엽채류	콩나물(가열 조리용)	일본
41	채소류	-	엽채류	콩나물	일본



	
일본 - 과자	일본 - 음료
	
일본 - 즉석식품	일본 - 두부

8) 자일리톨 적용 사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명칭	국가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추잉껌	추잉껌	Xylifresh Peppermint chewing gum sugar free	유럽
2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추잉껌	추잉껌	XylifreshWhitementholichechin ggsugarsugarfree	유럽
3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추잉껌	추잉껌	Xylifresh Menthol mint chewing gum sugar free	유럽
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추잉껌	추잉껌	Trident white Peppermint	유럽
5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추잉껌	추잉껌	Trident white Spearmint	유럽
6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추잉껌	추잉껌	Extra Peppermint Chewing Gum Sugar Free 60 Pieces 84g	유럽
7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추잉껌	추잉껌	Extra White Bubblemint Chewing Gum Sugar Free 46 Pieces 64g	유럽
8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추잉껌	추잉껌	Extra Spearmint Chewing Gum Sugar Free 60 Pieces 84g	유럽

	
유럽 - 껌	유럽 - 껌

9) 루테인 적용 사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명칭	국가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과자	생과자	일본
2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캔디류	캔디	일본
3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캔디류	사탕	일본
4	유가공품	발효유류	발효유	발효유	일본
5	음료류	과일·채소류음료	과·채음료	과실믹스쥬스(농축환원)	일본
6	음료류	다류	액상차	청량음료수	일본
7	조미식품	소스류	소스	반 고체 상태 드레싱	일본
8	채소류	-	엽채류	시금치	일본
9	채소류	-	엽채류	시금치 부침개	일본
10	채소류	-	엽채류	케일	일본
11	채소류	-	엽채류	시금치	일본

	
일본 - 과자	일본 - 음료
	
일본 - 캔디	일본 - 유가공품

10) 프로바이오틱스 적용 사례 (*Bifidobacterium, Lactobacillus* 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명칭	국가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과자	발효두유 식품(생과자)	일본
2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과자	초콜렛과자	일본
3	농산가공식품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기타 농산가공품	배추김치(썰어둔)	일본
4	농산가공식품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과·채가공품	배추김치(썰어둔)	일본
5	농산가공식품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과·채가공품	김치(잘게 썬(刻み))	일본
6	유가공품	발효유류	발효유	발효유	일본
7	유가공품	발효유류	발효유	유산균 음료	일본
8	유가공품	가공유류	유산균첨가우유	유제품유산균음료	일본
9	유가공품	발효유류	발효유	발효유	일본
10	유가공품	발효유류	발효유	유산균음료(유제품)	일본
11	음료류	기타음료	혼합음료	청량음료	일본
12	음료류	기타음료	혼합음료	청량음료수(젤리음료)	일본
13	음료류	기타음료	혼합음료	청량음료수(젤리음료)	일본
14	음료류	발효음료류	유산균음료	유산균음료	일본
15	음료류	발효음료류	유산균음료	유제품유산균음료	일본
16	음료류	발효음료류	유산균음료	청량음료	일본
17	음료류	탄산음료류	탄산음료	탄산음료	일본
18	음료류	과일·채소류음료	과·채주스	11%혼합과즙 함유 음료	일본
19	즉석식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조리식품	즉석 미소국(건조 타입)	일본
20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초콜릿류	준초콜릿	준 초콜릿	일본

	
일본 - 과자	일본 - 음료
	
일본 - 즉석식품	일본 - 초콜릿

● 요약

식품유형 (식품공전, 대분류)	난소 화성 말토 덱스 트린	DHA, EPA	Inuli n	GAB A	베 타 글 루 칸	식 물 성 스 테 롤	이 소 플 라 본	자 일 리 톨	루 테 인	프 로 바이 오틱 스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	✓	✓	✓	✓	✓	✓	✓	✓
빙과류	✓									
코코아가공품유 또는 초콜릿류	✓		✓	✓						✓
당류			✓							
잼류										
두부류 또는 묵류	✓						✓			
식용유지류										
면류	✓		✓	✓						
음료류	✓	✓	✓	✓			✓		✓	✓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안)										
장류										
조미식품	✓	✓	✓	✓					✓	
절임류 또는 조림류										
주류										
농산가공식품류					✓	✓	✓			✓
식육가공품 및 포장		✓		✓						
알가공품류										
유가공품	✓	✓	✓	✓		✓	✓		✓	✓
수산가공품류	✓	✓		✓						
동물성가공식품류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즉석식품류	✓	✓	✓	✓	✓		✓			✓
기타식품류										

[붙임]

## 참고문헌

1.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가이드라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20
2.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 광고 인정범위 지침서, 식품의약품안전청, 2008
3. 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zation Good Clinical Practice(ICH GCP), 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
4. 신의료기술평가 체계적 문헌고찰 지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1
5.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청, 2018
6. 機能性表示食品の届出情報, 消費者庁
7. 식품의 기능성 신고·표시제 도입·운영방안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8. 일본 보건기능식품제도 핸드북, 농림축산식품부, 2017
9. 「食品の機能性評価事業」結果報告, 公益財団法人 日本健康・栄養食品協会, 2013
10. 「食品の機能性評価モデル事業」の結果報告, 消費者庁, 2012
11. Japan's functional food insights part 1: Products with multiple health claims on the rise - exclusive data, NutraIngredients-Asia, Tingmin Koe, 2020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 해설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 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써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광고의 범위 및 요건을 정하여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 9.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8조에 따르면 기능성을 표시하는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령에서 별도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령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 제3호**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광고
  - 나.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 다. 특수용도식품(영아유아, 병약자, 비만자 또는 임신부·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으로 임신부·수유부·노약자, 질병 후 회복 중인 사람 또는 환자의 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라.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에 있는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내용의 표시·광고

상기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에 따라 제정되는 고시가 이 규정에 해당된다. 식품 제조에 배합하는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은 건강기능식품에서 정하는 기능성 중 생리활성증진기능의 정의와 그 의미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11. “기능성표시”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기능성에 관한 표시로서 인체의 성장·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성분의 생리학적 작용을 나타내는 영양성분기능표시와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개선을 나타내는** 영양성분기능 외의 생리기능향상표시 및 전체 식사를 통한 식품의 섭취가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감소와 관련한 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를 포함한다.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시행령)”와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개선을 나타낸다”는 표현의 방식은 일부 다르나 식품 성분이 가지고 있는 인체에서의 건강상의 기여에 관한 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규정에서 정하는 표시의 범위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중 **“생리기능향상표시”**와 동일한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재료”란 식품, 축산물, 식품첨가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
2. “성분”이란 제품에 따로 첨가한 영양성분 또는 비영양성분이거나 원재료를 구성하는 단일물질로서 최종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3. “1일 섭취기준량”이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이 정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최종 제품 요건을 위한 일일섭취량 또는 기능성을 나타내기 위한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하루 최소 섭취량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식품에서 정의하는 “원재료”란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물질을 의미하며,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원료”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에서의 “기능성원료”는 동 규정에는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요 “원재료”라 정의할 수 있다.

“성분”이란 화합물 등으로 식품 제조에 추가로 첨가한 비타민 및 무기질 등의 영양성분이나 비영양성분(예를 들어 자일리톨 등)에 해당하는 단일물질을 말하며 원재료 중 하나이다.

“1일 섭취기준량”이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에서 정하는 “1일 섭취량”을 의미하며 “1일 섭취량”이란 건강기능식품에 있어 안전성이 확보되고 기능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루에 섭취하여야 하는 양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의 1일 섭취량은 기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양으로서 안전성이 확보되고 기능성이 확인된 섭취량이라 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하 “기능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식품등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주류 및 특수의료용도등식품
2. 별표 1의 영양성분 함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등
3.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등 및 “어린이”, “아동”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나 이미지를 사용하여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이 섭취하는 것으로 표시 또는 광고한 식품등.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제외한다.
4. 임산부 또는 수유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식품등(임신 계획용 표방 식품등을 포함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의 식품등
  - 가. 정제
  - 나. 캡슐
  - 다. 과립 또는 분말(이 경우 바로 섭취하는 스틱, 포 형태에 한함)
  - 라. 액상(이 경우 스프레이형·앰플형 및 이와 유사한 형태, 인삼·홍삼에 대한 기능성을 나타낸 농축액·100 mL 이하 파우치 형태에 한함)

☞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능성의 범위는 앞서 제1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중 “생리기능향상표시”에 해당하는 기능성 표현의 범위를 의미하며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하는 식품은 제2항에서 제시하는 식품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가능하다.

제2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는 식품은 「식품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식품들의 기준 및 규격 중 14. 주류 전체와 10. 특수용도식품 중 10-5.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을 포함한다. 특수용도식품 중 특수의료용도등식품만 제외되나 그 다음 3호와 4호에서 영유아식품을 포함하는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만 하는 식품, 임산부 및 수유부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 또한 제외되고 있어 10. 특수용도식품에 해당하는 식품 대부분이 기능성표시를 할 수 없다고 간주된다.

주류 식품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능성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주류에 기능성원료를 함께 배합하였다 하더라도 기능성원료의 섭취로 인해 알코올의 섭취 또한 증가할 수 있어 음주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류에 기능성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은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환자 또는 질병이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진 사람의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경구 또는 경관급식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을 섭취하는 대상자는 대부분 의사의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며 그러한 환자들의 주요 식품이 특수의료용도식품이라 이들 식품에 기능성원료가 배합되고 기능성표시를 강조하게 되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커지므로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표시에서 배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특수의료용도 식품은 동 법률에서 별도로 표시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기능성표시가 그리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이들 식품이 아니라도 이 규정 별표 1에서 정하는 영양성분 함량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은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다. 별표 1에서 정하는 영양성분들은 총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당류, 나트륨으로서 과잉섭취 시 건강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영양소들이다. 이러한 위해 가능 영양소들의 함량이 일정 수준 이상 함유하는 식품들의 기능성표시는 강조로 오히려 위해 가능 영양소들의 과잉섭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들 영양소 함량이 과도한 제품들은 기능성표시 식품 대상에서 제외한다.

3호의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등은 「식품 기준 및 규격」 제3.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고시 제 2018-98호, 시행일 2020. 1. 1)에서 정의하는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의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22. 즉석식품류에 해당하는 식품(다만, 특수용도식품 제외) 중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으로서, 그대로 또는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바로 섭취하거나 가열 등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하는 식품”으로 해당식품에는 기능성표시를 할 수 없다.

“어린이”, “아동”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나 이미지(캐릭터 등)를 사용하여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이 섭취하는 것으로 표시 또는 광고한 식품들을 말한다.

하지만 식약처장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하여 안전, 영양 및 식품 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식품에 해당하는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 식품에는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참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현황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o?menu\\_grp=MENU\\_NEW03&menu\\_no=4241](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o?menu_grp=MENU_NEW03&menu_no=4241))

과립 또는 분말 형태의 식품등에도 기능성을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예로써 과립 또는 분말의 프로바이오틱스 등과 같은 기능성원료를 스틱이나 포형태로 포장한 식품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스틱이나 포형태로 분말 또는 과립을 포장을 한 식품이라도 컵스프, 고행차 등과 같이 스틱이나 포로 포장된 분말 또는 과립을 직접 섭취하지 않고 물을 붓는 등 조리과정이 필요한 식품에는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스프레이형 및 앰플형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는 의약품과 오인 소지가 있어 기능성 표시 제외대상이며 인삼 홍삼의 농축액 또는 인삼 홍삼 100ml 이하 파우치 형태로 포장이 된 액상 식품은 역시 기능성표시를 할 수 없다.

**제4조(기능성의 범위)** ① 이 고시의 기능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기능성 원료로 정해진 것 중 별표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능성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별지 서식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의 일반식품 사용신청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 별표 2 제2호의 의사결정도에 따라 인정받은 원재료의 기능성
3.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호 중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체계적 고찰, SR: Systematic Review)을 통해 과학적 자료를 갖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능성  
가. 특정 영양성분의 대체, 제거 또는 감소로 인한 기능성  
나. 숙취해소와 관련된 기능성  
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발효유류에 대한 장건강·위건강 기능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능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어린이, 임신·수유부, 노인 등 건강민감 계층과 관련된 내용  
예 : 수험생 기억력개선, 어린이 키성장, 노인 인지능력개선
2. 남성, 여성의 성기능 또는 생식기 건강과 관련된 내용  
예 : 정자운동성, 질건강
3.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6조 관련 별표 4에서 정한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에 대한 내용

☞ 기능성표시가 가능한 기능성원료 및 표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기능성표시가 가능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능성원료”로 인정한 원료의 기능성내용으로 국한하고 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공전”이라고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기능성원료” 중 식품원료로 사용에 제한이 없는 원료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들 기능성원료와 기능성내용, 1일 섭취량은 이 규정 별표 2 제2호에 제시하고 있다.

소위 “개별인정형”으로 불리우는 식약처장이 별도로 인정한 기능성원료에 대해서는

인정받은 영업자가 이 규정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별인정을 받은 기능성원료라도 모두 기능성 표시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공전 등재 기능성원료와 동일하게 “식품원료”로 사용에 제한이 없는 원료가 우선 대상이 된다. 식품원료로서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거나 식품첨가물 이라면 기능성표시로 인해 섭취량이 증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은 별표 2에 별도로 제시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능성표시 이외에 일반식품에서만 가능한 기능성표시가 일부 있다. 이러한 표시가 특정 영양성분의 대체, 제거 또는 감소로 인한 기능성이다. 특정 영양성분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의하고 있는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단백질, 필수지방산 등 영양성분 이외에 식품 섭취를 통해 생리적 작용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하거나 신체를 구성 등에 필요한 나트륨, 당, 지방 등을 포함한다. 예로써, 설탕을 대체하여 식후혈당의 상승을 감소시킨다거나 식용유지의 지방을 대체하여 지방의 흡수를 줄여준다는 등의 기능성 내용은 보충의 목적으로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로 간주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들 기능성은 별도로 관리한다.

숙취해소와 관련한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으로 해석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이 고시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또한 기존에 표시하던 발효유의 위건강 기능성은 오랜기간 “유효성”의 범주 내에서 표시하고 있었으나 이 고시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로 인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로 인정받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기능성원료 인정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 따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받기 어려운 특정 영양성분의 대체, 저감 등의 기능성 표시, 숙취해소,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되는 발효유의 위건강 기능성표시는 이 법률 다른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호 중 인체 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체계적 고찰, SR: Systematic Review)을 통해 기능성 내용이 과학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한다.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하는 “인체적용시험”이란 식품등의 표시·광고 내용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식품등이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인체적용시험은 의약품국제조화회의 임상시험관리기준(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zation Good Clinical Practice, ICH GCP)에 따라야 한다. ICH GCP 가이드라인에 따른다는 의미는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거친 프로토콜에 따라 시험이 진행되어야 하며 시험의 진행 과정, 결과 등은 모두 우수임상 시험관리기준인 Good Clinical Practice에 준해서 시험이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인체적용시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되는 인체적용시험은 WHO에서 운영하는 CRIS 시스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에 프로토콜을 등록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는 피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도출되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이다.

체계적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이란 관련된 인체적용시험결과들을 모두 검토한 후 연구의 유형에 따라 우선 분류하고, 개별 연구의 질(quality)를 각각 평가하고 모두 종합하여 연구의 일관성, 연구의 종합적인 숫자, 대상자 숫자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개별 전문가의 주관이 개입된 narrative review와는 다른 객관적으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도 이와 동등한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기능성원료를 배합하여 기능성을 표시하거나, 이에 합당하지 않아 이 고시에 따라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정도의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즉, 표시하고자 하는 기능성은 기능성 원료(성분) 자체 또는 기능성 원료를 함유하는 식품(완제품)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으로 평가하여 기능성이 입증되거나 해당 기능성 원료 또는 기능성 원료 함유 제품으로 수행한 인체적용시험 자료에서 기능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단, 표시 가능한 기능성은 입증된 기능성 자료가 기능성 원료에 대한 것인지 완제품에 관한 것인지 따라 표시 가능한 표현은 달라진다.

식품원료로 사용 제한이 없는 건강기능식품공전 등재 기능성원료나 개별인정 기능성원료라 하더라도 식품으로서의 건전성, 상위 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나 청소년, 임산/수유부, 노년기 등의 건강에 민감한 계층과 관련성이 아주 높은 기능성 내용이나 남성이나 여성에 대한 특별한 효과를 강조하는 내용은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 대상이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에서 정의하는 “전체 식사를 통한 식품의 섭취가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감소와 관련한 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 또한 제외된다. 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는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 고시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5조(식품등의 요건)**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식품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 받은 업소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 받은 업소에서 제조·가공되어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2. 식품등에 함유된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량은 별표 2 제1호에 따른 1일 섭취기준량의 30% 이상을 충족하고 최대함량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1일 섭취기준량 적용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1회 섭취참고량을 기준으로 한다.
3. 식품등에 사용된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에서 제조·가공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4.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을 사용한 식품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절차와 방법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식품등의 특성상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의 표시량 시험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호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절차와 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중 기능성분의 표시량 기준
  - 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된 기능성분 함량 기준 및 규격 중 기능성분의 표시량 기준
5. 식품등에 함유된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량은 유통기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제조일 또는 수입일 기준으로 매 6개월 마다 제4호에 따른 표시량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기능성표시를 하는 식품에 대한 요건을 설명하고 있다.



해당 제품에 식품 자체에서 유래하거나 배합하는 기능성원료를 별표 2 제2호의 1일 섭취 기준량 기준 30~100% 함유하여야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다.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하는 식품유형에 따라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HACCP 시설에서 제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수입부터 판매 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입식품등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유통이력추적관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기능성원료는 수입식품을 제외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GMP 시설에서 제조된 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식품(원료)의 경우, “유통이력추적관리”에 해당하는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 기능성원료는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된 기능성 원료나 개별인정된 기능성 원료 모두 기능성 원료를 최종제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성분(또는 기능성분)에 대한 기준과 규격이 각각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인 홍삼을 식품에 배합하면 홍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가 그 합으로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는지 표시되어야 한다.

기능성원료에 적합한 홍삼은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가 2.5 mg/g 이상 함유된 원료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료를 배합하여 식품을 제조하면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의 총 합이 표시하는 양의 80% 이상 검출되어야 한다. 홍삼 기능성원료의 섭취량도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의 합으로 표시하고 있다.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의 분석법은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서 제시하는 분석법을 따라야 하나 간혹 식품의 특성에 따라 이 분석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각 영업자는 다른 분석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시험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호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절차와 방법이란 해당 분야의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으로서 정부, 국제기구·기구·학회[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국제분석화학회(AOAC), 국제표준화기준(ISO)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절차와 방법을 말한다.

기능성을 표시하는 식품은 배합한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이 유통기한까지 일정하게 그 함량이 유지되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조 또는 수입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매 6개월마다 배합한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을 검사하여 해당 기능성 원료의 표시량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표시량 기준은 해당 기능성 원료마다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을 수 있으니 기능성 원료의 기준과 규격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표시 또는 광고의 방법)** ① 기능성을 표시하려는 식품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기능성 표시 서식 도안을 활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또는 보고된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이 식품등에 들어있다는 내용  
 예 : 본 제품에는 A(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또는 보고된) B(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가 들어 있습니다.
2. 기능성 성분 함량. 이 경우 기능성 성분 함량 표시 단위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 아. 1)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단위 기준을 준용한다.
3. 1일 섭취기준량
4. 섭취 시 주의사항. 이 경우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별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
6.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제품이 아니라는 문구
7. 균형잡힌 식생활을 권장하는 문구
8. 이상사례가 있는 경우 섭취를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문구

②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있는 식품등에 한하여 기능성 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 동 조항은 기능성에 관한 표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내용,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배합한 기능성 원료의 1일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을 배제하기 위한 문구(“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는 식품의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의 단위는 영양성분표시 단위를 따른다. 이 외의 문구들은 도안 등을 활용하여 영업자가 원하는 곳에 표시할 수 있다.

기능성에 관한 표시는 “이 제품에는 A(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또는 보고된) B(원재료 또는 기능성분)가 들어 있습니다”의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1일 섭취량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 공개 등)** 제6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하려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업소명
3. 기능성 성분명과 그 함량
4. 1일 섭취기준량 및 기능성 성분 함량의 1일 섭취기준량에 대한 비율
5. 기능성 표시 내용
6. 과학적 근거자료

☞ 기능성을 표시하는 식품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정보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 한국식품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능성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http://adf.kfia.or.kr/company/open/openData.do?menuKey=406>

**제8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 - 129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숙취해소 기능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숙취해소 관련 기능성은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따라 표시·광고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표시·광고 내용 및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발효유류 장건강·위건강 표시·광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효유류에 대한 장건강·위건강 기능성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표시·광고 내용 및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는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 변화되는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동 규정은 매 3년마다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규정에 해당된다.

동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숙취해소 제품은 기능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두기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발효유류의 장건강 및 위건강에 관한 표시 역시 202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표시 광고 내용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동 고시를 따라야 한다.

[별표 1] 기능성 표시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기준(제3조제2항제2호 관련)

1. 공통기준

가. 식품유형별로 각 영양성분의 함량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식품별 영양성분 함량기준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해당식품의 1회 섭취참고량을 기준 단위로 한다. 다만, 1회 섭취참고량이 30 g 이하이면 50 g(mL)으로 하고, 1회 섭취참고량이 없는 경우와 식용유지류 중 트랜스지방의 경우는 100 g(mL)으로 한다.

구 분 영양성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							
	① 일반식품	② 농축과채즙, 과채주스	③ 김치류, 장류	④ 식용유지류	⑤ 소스, 마요네즈	⑥ 우유, 가공유	⑦ 치즈	⑧ 초콜릿
총지방	10.0 g 이하	10.0 g 이하	10.0 g 이하	-	-	10.0 g 이하	15.0 g 이하	-
포화지방	3.0 g 이하	3.0 g 이하	3.0 g 이하	20.0 g 이하	3.0 g 이하	5.0 g 이하	10.0 g 이하	-
트랜스지방	0.2 g 이하	0.2 g 이하	0.2 g 이하	2.0 g 이하	0.2 g 이하	0.5 g 이하	0.8 g 이하	0.2 g 이하
당류	20.0 g 이하	26.0 g 이하	20.0 g 이하	20.0 g 이하	20.0 g 이하	20.0 g 이하	20.0 g 이하	20.0g 이하
나트륨	400.0 mg 이하	400.0 mg 이하	-	400.0 mg 이하	400.0 mg 이하	400.0 mg 이하	400.0 mg 이하	400.0 mg 이하

주) ①일반식품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공식품 중 ②~⑧을 제외한 가공식품

☞ 기능성을 표시하는 식품 중 이들 영양성분의 함량이 일정 수준 이상 넘으면 위해 영양소를 과잉으로 섭취할 우려가 있어 제한하고 있다. 상기 표에 제안하는 함량은 개별 식품유형마다 설정되어 있는 1회 섭취참고량을 기준으로 하며, 1회 섭취참고량이 없는 경우는 100g(mL) 기준, 1회 섭취참고량이 낮은 경우(30g 이하)에는 50g 기준으로 환산해서 적용한다.

## 2. 개별기준

가. 원재료 또는 성분별 기능성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식품등은 다음의 영양성분 ‘저’ 표시기준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 표시기준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연번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	기능성	영양성분 개별 기준
1	인삼	면역력 증진·피로·뼈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2	홍삼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항산화·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혈소관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포화지방, 저 트랜스지방
3	클로렐라	피부건강·항산화·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포화지방, 저 트랜스지방
4	스피루리나	피부건강·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포화지방, 저 트랜스지방
5	프로폴리스 추출물	항산화·구강에서의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구강 항균작용은 구강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형태에 한하며, 섭취량을 적용하지 않음	저 당류
6	구아바잎 추출물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당류
7	바나바잎 추출물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당류
8	EPA 및 DHA 함유 유지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포화지방, 저 트랜스지방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9	매실추출물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10	구아검/구아검 가수분해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포화지방, 저 트랜스지방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당류
		장내 유익균 증식·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11	난소화성말토 덱스트린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당류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포화지방,

연번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	기능성	영양성분 개별 기준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트랜스지방 -
12	대두식이섬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포화지방, 저 트랜스지방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당류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13	목이버섯 식이섬유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14	밀식이섬유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당류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15	보리식이섬유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16	옥수수겨 식이섬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포화지방, 저 트랜스지방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당류
17	이눌린/ 치커리추출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포화지방, 저 트랜스지방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당류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18	차전자피 식이섬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포화지방, 저 트랜스지방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19	호로과종자 식이섬유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당류
20	알로에 겔	피부건강·장건강·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21	프락토올리고당	장내 유익균 증식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22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23	홍국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포화지방, 저 트랜스지방
24	대두단백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포화지방, 저 트랜스지방

연번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	기능성	영양성분 개별 기준
25	폴리감마 글루탐산	체내 칼슘흡수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26	마늘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포화지방, 저 트랜스지방
27	라피노스	장내 유익균의 증식과 유해균의 억제 도움을 줄 수 있음 배변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28	분말한천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29	유단백 가수분해물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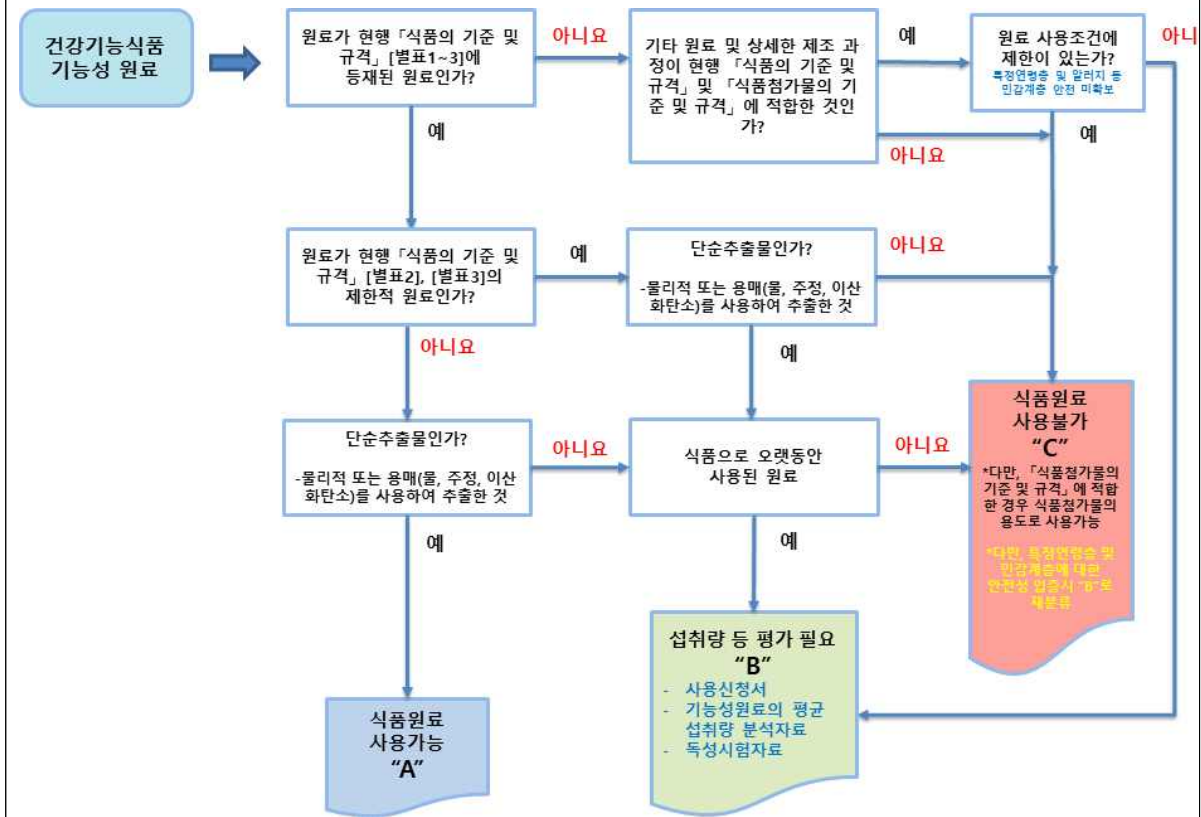
☞ 2번에서 제시하는 위해가능 영양소의 함량은 이들 영양소기준치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심혈관계 관련한 기능성과 혈당조절 관련 기능성을 표시하는 제품은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당류 등의 함량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절하여야 하므로 이들 기능성을 표시하는 제품은 별도로 영양소강조표시 중 “저”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한다.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을 기능성 원료로 함유하는 제품에 “혈중중성지방개선”기능성 표시는 해당제품 중 유해우려 영양성분에 해당하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영양소강조표시 중 “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2] 기능성 범위(제4조제1항 관련)

1. 기능성 원료 사용을 위한 의사결정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식품등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사결정도



☞ 기능성표시를 위해 사용하는 기능성 원료는 이 의사결정도에 따라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별표 2, 2번에서 제시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들도 이 의사결정도에 따라 적용했을 때 [식품원료 사용 가능 "A"]에 해당하는 원료들이다. 원료가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사용의 제한이 없이 식품원료로 등재되어 있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한 물리적 조작 또는 물, 주정,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제조된 단순 추출물일 경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사용제한이 있으나 단순한 추출물인 경우, 사용제한이 없고 단순추출물은 아니나 오랜기간 식품으로 섭취되었던 원료인 경우, 사용조건이 없는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규정의 사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기능성 원료를 함유하는 제품들을 국민들이 섭취함으로써 섭취하게 되는 기능성 원료의 평균 섭취량 분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평균섭취량이 각 원료들의 ADI보다 높아지면 추가의 독성시험이 필요할

수 있다. 이외의 기능성원료들은 일반식품에 기능성표시를 위한 목적으로 배합할 수 없다.

※ 식품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의 기능성

순번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	기능성	1일 섭취기준량
1	인삼	면역력 증진·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의 합계로서 3~80 mg
		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의 합계로서 25 mg
2	홍삼	면역력 증진·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계로서 3~80 mg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계로서 2.4~80 mg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계로서 25~80 mg
3	클로렐라	피부건강·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총 엽록소로서 8~150 mg
		면역력 증진·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총 엽록소로서 125~150 mg
4	스피루리나	피부건강·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총 엽록소로서 8~150 mg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총 엽록소로서 40~150 mg
5	프로폴리스 추출물	항산화·구강에서의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구강 항균작용은 구강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형태에 한하며, 섭취량을 적용하지 않음	• 총 플라보노이드로서 16~17 mg
6	구아바잎 추출물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총 폴리페놀로서 120 mg
7	바나바잎 추출물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코로솔산으로서 0.45~1.3 mg
8	EPA 및 DHA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 EPA와 DHA의 합으로서 0.5~2 g

순번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	기능성	1일 섭취기준량
	함유 유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EPA와 DHA의 함으로서 0.6~1 g
9	매실추출물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구연산으로서 1~1.3 g
10	구아검/구아검 가수분해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식후 혈당상승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식이섬유로서 9.9~27 g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식이섬유로서 4.6~27 g
11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식이섬유로서 11.9~30 g(액상원료는 11.6~44 g)
		혈중 중성지방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식이섬유로서 12.7~30 g(액상원료는 12.7~44 g)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식이섬유로서 2.5~30 g(액상원료는 2.3~44 g)
12	대두식이섬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대두 식이섬유로서 20~60 g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대두 식이섬유로서 10~60 g
13	목이버섯 식이섬유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목이버섯식이섬유로서 12 g
14	밀식이섬유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밀 식이섬유로서 6~36 g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밀 식이섬유로서 36 g
15	보리식이섬유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보리 식이섬유로서 20~25 g
16	옥수수겨 식이섬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옥수수겨식이섬유로서 10 g
17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식	• 이눌린/치커리추출물 식이섬유로서

순번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	기능성	1일 섭취기준량
		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7.2~20 g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이눌린/치커리추출물식이섬유로서 6.4~20 g
18	차전자피 식이섬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차전자피 식이섬유로서 5.5 g 이상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차전자피 식이섬유로서 3.9 g 이상
19	호로과종자 식이섬유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호로과종자 식이섬유로서 12~50 g
20	알로에 겔	피부건강·장건강·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총다당체 함량으로서 100~420 mg
21	프락토 올리고당	장내 유익균 증식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프락토올리고당으로서 3~8 g
22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100,000,000 CFU
23	홍국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총 모나콜린 K로서 4~8 mg
24	대두단백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대두단백으로서 15 g 이상
25	폴리감마글루탐산	체내 칼슘흡수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폴리감마글루탐산으로서 60~70 mg
26	마늘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마늘 분말로서 0.6~1.0 g
27	라피노스	장내 유익균의 증식과 유해균의 억제 도움을 줄 수 있음, 배변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라피노스로서 3~5 g
28	분말한천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분말한천으로서 2~5 g (총 식이섬유로서 1.6~4.0 g)
29	유단백가수분해물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유단백가수분해물로서 150 mg (알파에스1카제인( $\alpha_1$ -casein) (f91-100)으로서

순 번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	기능성	1일 섭취기준량
			2.7~4.1 mg)

※ 기능성 표시 서식 도안(제6조제1항 관련)

제 품 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시) 이 제품은 ○○○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시설에서 제조</li> <li>■ (타법 의무표시사항 예시) 정당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교환, 환불</li> <li>■ (업체 추가표시사항 예시)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li> <li>■ 부정·불량식품 신고 : 국번없이 1399</li> <li>■ (업체 추가표시사항 예시) 고객상담실 : ○○○-○○○-○○○○</li> </ul>
식품유형		○○○(○○○○○○○*) *기타표시사항	
영 업 소 ( 장 ) 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식품, ○○시○○구○○로 ○○길○○	
유통기한		○○년○○월○○일까지	
내 용 량		○○○ g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함량		○○, ○○○○, ○○○○○○, ○○○○○○, ○○, ○○○○○○ ○, ○○○, ○○○○○○ ○○*, ○○○*, ○○* 함유 (*알레르기 유발물질)	
기능성 표시	기능성분 함량	○○○으로서 (○○mg)	영양성분 (주표시면 표시 가능)
	1일 섭취기준량	○○○으로서 (○○mg)	
	섭취시 주의사항	○○○○○○○○○○○○○○○○○○○○ 균형 잡힌 식생활을 권장합니다. 이상사례가 있는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제품은 질병치료 제품이 아닙니다.	
품목보고번호		○○○○○○○○○○○○○○-○○○	

※ 기능성 원료의 일반식품 사용 신고서

■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별지 서식]

## 기능성 원료의 일반식품 사용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업체명(기관명)		영업의 종류	
			허가/신고/등록번호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수입건강기능식품	수출국		
	제조회사			
	소재지			
신청사항	기능성 원료 인정 번호			
	기능성 원료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능성 원료의 일반식품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서
<b>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b>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인)</span>	
<b>유의사항</b>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원재료 또는 성분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b>처리절차</b>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    검토    →    결재    →    공고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기능성 평가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